



교정동우회가 퇴직 교정공무원과 함께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연혁

- 1963. 10. 1. 퇴직교정기관장들이 교우회 발족
- 1983. 11. 4. 정부 방침으로 전국규모의 교정동우회 출범
- 2013. 7. 29.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공포 시행

목적

- 회원들의 교정경험과 지식을 공유
- 교정발전에 기여
- 국민들의 법질서 의식 함양, 교정의 선진화 등 공익 실현
-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상부상조 및 친목도모 등

조직

- 임원진 :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대의원
 - 지 회 : 36개 지회 (정우회 포함)
 - 회 원 : 정회원 3,630여명
- ※ 명예회원 : 현직 교정공무원 16,776명

주요사업 및 활동사항

- 회원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사업
- 상부상조 및 친목도모 사업
- 현직 직원과의 유대강화·교정참여
- 수용자 교정교화 및 출소자 재사회화 사업
- 도서출판 및 판매업등 수익사업
- 국민의 법질서의식 함양 사업
- 지역사회 유대강화 및 봉사활동 사업 등

가입문의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34 교정공제회 역삼빌딩 10층
문의: 02-521-2026, FAX 02-6952-2023
홈페이지: <http://www.kncova.or.kr>
- **전국 지역별 각 지회**
퇴직 시 소속 교정기관 총무과 (서무담당)에 문의

전국 각 지회 현황

2024. 3. 1. 기준

지역별	지회별	회장	사무국장
서울지역	서울	박수호	안승용
	동부구	백봉기	안외섭
	남부구	진기대	류성현
	남부교	이종근	김범남
경기지역	안양	박상재	조성주
	인천	강명학	장재학
	수원	유병성	(김용철)
	평택	권윤식	구자현
	의정부	조상필	김왕윤
강원지역	춘천	채용석	홍병걸
	원주	이기남	문정현
	강릉	권혁무	강기원
	대구	황용철	이종완
	대구구	정화선	이영준
경북지역	안동	김수현	김성배
	김천	이근재	김진홍
	경주	서경석	최현찬
	청송	김형선	이오우
	부산	김운섭	조경종
	부산강서	김영귀	전준석
경남지역	창원	김종우	주강돈
	진주	한윤갑	조호제
	울산	정진훈	공정술
	대전	김영복	최관규
	천안	송창호	양해문
충청지역	공주	명제능	김세환
	홍성	이용화	윤태희
	청주	오호성	남익우
	전주	(김재영)	조만기
	군산	나종철	김형섭
전북지역	광주	배정배	이성재
	목포	조규도	박종화
	순천	조점기	김은섭
	장흥	이상실	강근배
	제주	신원식	김남경
서울	정우회	이국주	정명철
	본회	송영삼	정명철
계	본회, 36개 지회 (1정우회)		

* 연락처는 개인정보 관계로 생략하였습니다.



OR ECTIONS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교정 포커스

우리나라 최초의 파빌리온(전주형) 감옥 건축:
인천소년형무소

교정 리포트

범죄와 형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과 범죄 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연구: 유치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칼럼

범죄자 아니면서 교도소에 생활하는 유일한 사람
“교정공무원”

03

Vol.574. 2024. MARCH

Contents

VOL.574. 2024. MARCH

COVER STORY

바야흐로 봄이 찾아왔습니다.
꽃들이 일제히 피어나고, 나뭇
가지에는 생기가 돌아왔다는 것이
그 증거지요. 이번 월간 <교정>
에는 이런 기운 또는 느낌을 가득
담아 독자들에게 전해드리고 싶
습니다.
이 책을 읽는 공무원의 입장에도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깃들길
바라며, 봄날의 싱그름이 여러분의
업무와 생활에 활력을 더해
주길 기대합니다.



Corrections PLACE 교정 플레이스



04

04 교정 이모저모

신임 회장, “명실상부한 단체가 되기 위한 방안 계획” 공표
2024년도 제41회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08 역사와 오늘

치기 어린 과거를 넘어 성숙하고 희망찬 청춘으로
김천소년교도소

16 교정의 공간

올바른 변화의 든든한 후원자
김천소년교도소 사회복귀과

22 외부 칼럼

인간 심리가 빛어내는 상호작용의 예술, 협상

발행인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4년 3월 25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괴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
▣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옆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Corrections ARCHIVE 교정 아카이브



26

26 교정 포커스

우리나라 최초의 파빌리온(전주형) 감옥 건축:
인천소년형무소
금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

44 교정 논문

수용자 징벌 사유의 미수 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하)
윤동호 청주교도소 보안과 교워

50 교정 리포트

범죄와 형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과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연구: 유치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박명인 경기대학교 박사과정
윤옥경 경기대학교 교수

78 전문가 칼럼

범죄자 아니면서 교도소에 생활하는 유일한 사람
“교정공무원”
송남옥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교감



122

84 교정 판례

의료처우 관련 판례 검토
마성용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 교감

102 교정 백과

법무부 교정시설 내 건축분야 직업훈련 교육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인 전주교도소 직업훈련과 직업훈련교사

122 교정 NEWS

133 모범 공무원

134 독자마당



신임 회장, “명실상부한 단체가 되기 위한 방안 계획” 공표

2024년도 제41회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2024년 제41회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정기총회가 2월 23일 서울 강남구 동보성 연회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를 통해 지난해 회무 및 현황 보고 등의 안건 처리와 더불어 송영삼 전 광주지방교정청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새로운 회장단을 구성하는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제41회 이사회·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2024. 2. 23.(금) 12:00

동보성(연회장)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행사, 성공적으로 개최

2024년 제41회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2월 23일 서울 강남구 소재 동보성 연회장에서 4년 만에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신용해 법무부교정본부장, 이태희 교정동우회장, 이국주 정우회장, 전직 법무부 교정국장·교정본부장, 장종선 교정공제회 이사장, 윤춘 김학성 고문, 김앤장 유병철 고문, (주)부영주택 박병용 대표이사, 부회장단, 이사, 대의원, 전국 35개 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학술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등이 축하 화환을 보냈다.

4년간의 활동 마무리하는 이태희 교정동우회장

이번 총회를 마지막으로 물러나는 이태희 교정동우회장은 이임사로 “지난 4년간 코로나19 등으로 다소 미



제41회 이사회·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2024. 2. 23.(금) 12:00

동보성(연회장)

흡한 점이 많아 아쉬운 감이 있으나, 교정동우회가 법정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아쉬움과 못다한 일들은 신임 회장단에게 기대를 걸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의 지원과 많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총회를 마지막으로 물러나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축사자로 나선 신용해 법무부교정본부장은 “지난해에 순직교도관 충혼탑을 건립했으며 앞으로도 교정동우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교정동우회 지회장님들과 지역 내 교정기관 방문, 간담회 개최 등 소통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송영삼 신임 교정동우회장 취임

아울러, 그간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지난 2020년 정기총회가 열린 뒤 매년 서면으로 개최해오다 4년 만에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은 물론 금년도 사업계획의 심의·의결 뿐 아니라 새 임원진도 선출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송영삼 전 광주지방교정청장(현 사무총장)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부회장 5인, 이사 29인, 감사 2인, 대의원 20인도 함께 선출됐다.

이 자리에서 송영삼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정동우회가 명실상부한 퇴직교도관 단체로 발전하기 위해선 퇴직교도관의 회원 가입 확대 추진, 전국 지회 활동방향의 공익사업위주 전환, 자체 기금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수익사업 추진과 교정동우회 활동사항의 적극적인 홍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밖에도 교정동우회지회장 등 임원으로 8년 이상을 봉사한 백봉기 서울동부지회장, 김태수 전 서울남부구지회장, 조상필 의정부지회장, 권윤식 평택지회장, 송창호 천안지회장, 이재홍 전 전주지회장, 이상실 장흥지회장, 김경식 전 제주지회장, 최낙용 전 부산강서지회장, 주강돈 창원지회 사무국장, 정진훈 울산지회장 등 11명이 선정됐다.

한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는 지난 1983년부터 전국 단위의 퇴직교도관 단체로 출범해 2013년 7월 30일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이 제정·공포된 법정단체로, 본회와 전국 36개 지회로 구성되어 현재 3,700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의 정기 및 수시 친목모임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불우이웃돕기, 자연보호 등과 함께 평생의 교정공무원 경험을 살려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위원회 참여 및 교정계와 활동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치기 어린 과거를 넘어 성숙하고 희망찬 청춘으로

김천소년교도소

질풍노도의 시기에 큰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에게는 당연히 이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잘못을 마음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청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김천소년교도소는 소년 수용자들이 치기 어린 과거를 반성하고 성숙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오랜 역사와 전통의 소년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는 100년 넘는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교정기관이다. 1921년 대구감옥 김천분감으로 개청 후 1924년 김천소년형무소로 승격 됐으며, 1981년 현 위치인 김천시 지좌동으로 이전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중간에 약 5년 동안 일반 교도소로 직제 개편된 적도 있지만 이 시기를 제외하면 줄곧 소년 수용자를 전담해 왔으며, 작년 3월 만델라소년학교가 개교되기 전까지 전국 유일의 소년 수용자 전담 교도소로서 역할을 그 충실히 수행했다. 현재는 만델라소년학교가 만 18세 미만 소년 수용자를, 김천소년교도소는 만 18세 이상 소년 수용자와 만 22세 미만의 소년처우 수용자를 담당한다.

기관명에 ‘소년’이 붙어있다 보니 소년 수용자들만 수용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김천소년교도소에는 소년 수용자보다 더 많은 성인 수용자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소년교도소는 성인 수용자와의 접촉이 소년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 수용동과 운동시



간, 교육장 등을 분리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년 수용자들이 전용 공간에서 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등을 받는 동안 성인 수용자들은 2개 위탁작업장과 1개 개방작업장, 일부 거실에서 작업에 임하며 전반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한다.

이렇듯 소년 수용자와 성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 계호 등을 각각 수립하고 실행하다 보니 업무상 어려운 점이 상당 부분 있지만, 남창식 소장 이하 김천소년교도소의 교정공무원들은 하나로 힘을 합쳐 모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낸다.

새 꿈을 찾아주는 맞춤형 교육과 직업훈련

김천소년교도소는 앞길이 창창한 소년 수용자들이 진정한 반성의 시간을 갖고, 출소 후의 청춘을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최소 고졸 자격을 갖추는 것이 소년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해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아울러 매년 2회 검정고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매년 60여 명의 소년 수용



자가 중·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또한 고졸 자격을 갖춘 동시에 학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수용 생활이 모범적인 소년 수용자들은 대학진학준비반과 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작년 11월 시행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소년 수용자 4명이 응시, 사회복귀과 강의실에서 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한편 직업훈련을 원하는 소년 수용자는 한식조리, 제과제빵, 자동차정비 등 3개 직종의 직업훈련생이 되어 전문적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소년 수용자만을 위한 체계적 커리큘럼과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보다 세세하고 실질적인 직업훈련이 가능하며, 이를 증명하듯 각 직종별로 매년 10명 이상의 소년 수용자가 자격증을 취득 중이다. 특히 제과제빵 직종에서는 직업훈련교사의 철저한 지도 아래 만든 과자와 빵을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매주 전달함으로써 교정기관에 대한 지역사회 이미지 향상에 일조하고 있다.



소년 수용자와 청소년의 미래를 바로 세우다

김천소년교도소는 건전한 사회 복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성 순화를 위해 문화예술반(제로캠프) 교육과정과 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문화예술반은 ‘예술로 실현하는 교정교화’라는 기치 아래 뮤지컬, 난타, 사물놀이, 악기 연주 등 다양한 예능을 배우는 교화 프로그램으로, 배우 최불암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제로캠프와 외부 강사진의 지도 아래 매년 연말 뮤지컬과 연극 형식의 공연을 진행한다.

작년 12월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역 인사와 소년 수용자 가족 등 외부 관객 250여 명을 초청해 뮤지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무대에 올렸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감성에 맞춰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인성교육실에서 심리상담, 인성교육, 금융교육 등으로 구성된 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출소할 소년 수용자들이 사회에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년교도소라고 명명된 교정기관인 만큼, 김천소년교도소는 소년 수용자 처우 개선과 청소년 범죄 예방에도 앞장선다. 작년에는 소년 수용사 가석방 심사 기회 확대와 취업 및 취학 조건부 가석



방 제도 도입에 큰 역할을 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김천구미협의회와 함께 관내 중·고등학생이 김천소년교도소를 직접 방문해 교정 장비, 수용동, 교육장 등을 체험·견학함으로써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바른마음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사회의 한 축이 되어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소년 수용수들을 위해, 김천소년교도소는 오늘도 새롭고도 효과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올바른 변화의 든든한 후원자

김천소년교도소 사회복귀과

소년 수용자는 각종 교육과 교화에 의한 긍정적 변화가 성인 수용자에 비해 잘 일어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올바른 변화를 위한 다채로운 교육 지원이 지속적으로, 폭넓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김천소년교도소 사회복귀과는 이러한 과정의 중심에 서 있는 부서로서,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꾸리려는 소년 수용자들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소년수의 미래에 가능성을 더하다

사회복귀과는 이름 그대로 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돋는 교정기관의 핵심 부서 중 하나로, 김천소년교도소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교화의 가능성 및 교육 효과가 한층 높은 소년 수용자를 중심으로 교육 교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정승렬 과장을 포함한 11명의 직원들은 소년 수용자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소년 수용자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사회에 대한 반감과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꿈과 목표가 불확실합니다. 또한 다방면에 걸친 교육이 제공돼야 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상당 부분 제한돼 있죠. 이들이 별다른 교화 과정 없이 그대로 사회에 나오면 제2의 범죄를 일으킬 수 있지만, 동시에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으로 인해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여줄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차피 이들이 사회에 나와야 한다면, 후자 쪽에 더 많은 역량을 쏟는 게 옳은 방향 아닐까요? 김천소년교도소 사회복귀과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소년 수용자 한 명 한 명에게 새로운 꿈의 씨앗을 심어 줄 수 있는 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긍정적 미래의 가능성을 더욱 넓힌다는 측면에서, 사회복귀과의 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은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소년 수용자로 들어와 청년기에 들어서고 있는 만 22세 미만의 소년처우 수용자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업과 미래에 대한 의지가 높은, 이제 막 성인에 들어선 이들에게 꾸준히 배우고 마음을 수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성공적 사회 복귀의 확률을 높여 나가고 있는 것이다.

제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김천소년교도소 사회복귀과는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 대학진학준비반에 이어 올 3월부터 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정을 개강함으로써 소년 수용자들의 교육 연속성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방송통신대학교 교육과정은 시행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4명이 등록할 정도로 학업 연장 의지를 품고 있는 소년 수용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회복귀과는 이와 함께 소년 수용자들이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사회 복귀 시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는 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우리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제로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죄를 깊이 반성하고 제로(Zero)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제로캠프는 예능에 관심이 높거나 재능이 있는 문화예술반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뮤지컬, 난타, 사물놀이, 악기 교육 등 다양한 예술 영역을 연습해 매년 연말 이 모든 것을 한 무대에 합친 뮤지컬을 수백 명의 가족들과 지역





인사 앞에서 선보이는 종합예술 교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인 전국 유일의 소년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제로캠프는 가족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무대를 통해 선보일 수 있고, 공연 연습을 하는 가운데 외부 강사 및 다른 수용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사회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관계 회복, 사회적응능력 향상, 자신감 증진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사회복귀과가 제로캠프를 ‘대체 불가한 교화 프로그램’으로 꼽으며 사랑스러움을 감추지 않는 이유다.

잃어버린 시간을 향한 희망찬 여정

김천소년교도소는 작년 12월 박호서 대구지방교정청장, 최불암 제로캠프 이사장,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등의 내빈과 교정위원 및 소년 수용자 가족 250여 명을 초청해 뮤지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공연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외부 초청 공연 행사였기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다.

양질의 공연을 올리기 위해 연습 시간을 늘리다 보니 사회복귀과 직원과 참가 소년 수용자 모두 평소보다 긴 하루를 보냈다. 외부인 초청과 계획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유관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



고히 구축하는 데에도 적잖은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 끝에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자신감과 긍정성이 부쩍 성장한 소년 수용자들을 바라보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는 것이 사회복귀과 직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3년 만에 외부 초청 제로캠프 공연을 치르고 나니 이제야 우리 부서의 업무가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올해는 기존의 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에 더해, 문화의 집 2층을 노래연습실, 미니도서관 등을 갖춘 종합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인데요. 소년 수용자들이 이곳에서 누리게 될 다양한 문화 체험은 궁정적 감수성 증진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사회복귀과 직원들은 소년 수용자들을 향한 관심과 지원이 이들을 꽂아온 청춘으로 승화시킬 것이라 굳게 믿으며, 우리나라의 내일을 밝힌다는 마음가짐으로 소년 수용자 교정교화에 모든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잃어버린 시간을 향한 김천소년교도소 사회복귀과와 소년 수용자들의 여정은 현재진행형이다.

Interview 사회복귀과 정승렬 과장



수용자들의 밝은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교도소는 소년 수용자와 성인 수용자가 함께 있다 보니 각각에 대한 교화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항상 웃으며 일하는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수용자, 특히 소년 수용자들이 새 사람이 되어 사회로 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Art, Negotiation

인간 심리가 빚어내는 상호작용의 예술, 협상

협상은 양측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각 이해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찾아내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는 어려운 문제나 이해 차이를 극복하며 상호 협력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협상의 복잡한 과정에서는 각 이해 당사자의 감정, 관점, 그리고 의사소통 스타일 등 다양한 인간 심리의 측면이 드러나게 되어, 예상치 못한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상호작용의 예술로 꼽히고 있다.

글 박경언 문화칼럼니스트

협상, 미묘한 힘에서 비롯된다

한 커플이 비행기로 갈아탈 탑승구로 향하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비행기는 아직 출발하지 않았지만, 탑승구 문이 이미 닫혔던 것. 설상가상으로 직원들은 현재 상황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커플은 기지를 발휘하여 비행기에 탑승했다. 조종사가 자신들을 볼 수 있는 유리창 앞에서 서서 간절한 눈빛으로 조종사를 바라보다가 눈빛이 마주쳤을 때 낙담한 표정과 함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다. 위 이야기는 협상의 한 예이다. 해당 커플들은 이미 이륙한 비행기를 타기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상대에게 강력한 무언의 호소를 하면서 대단히 극적인 결과를 얻어냈다.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

Check

1. 협상에서 감정 통제와 평정심 유지가 핵심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2. 제한된 시간에도 반드시 준비를 하고 명확한 의사전달이 중요하며, 협상 전 자신의 생각을 정리 한 채로 말해야 한다.

3. 협상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의사결정자를 신속히 찾아야 하며, 규정을 따르는 직원보다 실질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야 한다.
4. 목표에 집중하고 객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인간적 소통과 관계 구축이 협상에서 성공이 좌우된다.
5. 인간적으로 소통하라. 사람과의 관계는 협상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다.
6. 상대가 가진 힘과 지위를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방법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술 같은 미묘한 힘을 발휘한다. 이는 모두 인간의 심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은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다.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말이나 혹은 몸짓을 통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협상을 시도 한다. 운전하거나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혹은 심부름을 할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니 항상 협상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상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협상을 잘하거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뿐이다.



모든 행동이 곧 협상이다 :

목표 달성을 위한 협상 전략

협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달성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다. 그러나 이점에 매몰되어 우리는 부차적인 요소를 간과하여 목표를 저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협상 시에는 인간관계나 원원, 협상 도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과 몸짓까지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써 적절해야 한다.

예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라는 평범하게 들리는 이 질문조차 네 가지의 협상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형식적인 분위기 탈피하는 데 도움을 준다. 둘째, 질문을 통한 정보 수집은 상태의 상태를 살피는데 효과적이다. 셋째, 상대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 상대에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화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협

상을 유리하게 만들어준다.

인간의 심리를 기반으로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협상법은 대상의 심리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아 금전적인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양측이 가치를 교환하는 방식임으로 협상 폭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협상 폭을 결정하는 것은 협상가의 창의성이다. 이는 쌍방이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대상을 교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를 이기려 하는 자세보다는 상호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협상 태도는 협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협상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며, 대인관계에서의 신뢰는 핵심이므로 솔직한 모습을 보이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향을 미리 알리어 양해를 구하는 것 역시 협상 성공의 지름길이다.



구체적인 목표와 협상의 힘

앞서 이야기했듯, 협상을 하는 이유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로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목표를 정했다면 모든 생각과 행동이 목표 달성을 꼭 필요한지에 대해 자문해 보아야 한다.

미국의 한 여성 기업가는 대기업의 전략 담당 부사장으로 임원이 되자마자 임원 회의를 계획하며 열 두명의 이사에게 회사의 목표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려 했다. 이 소식을 들은 CEO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그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부사장은 이사들을 회의 소집했고,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그녀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발표했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적어 냈을까? 결과는 다소 놀라웠다. 그들이 적어낸 목표는 무려 열네 개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기에는 심지어 서로 상충하기까지 목표들도 있었다.

그런 이유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는 목표를 계속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일수록 좋다. 뚜렷한 목표 없이 협상에 임하는 것은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운

전대를 잡는 것과 같으므로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그 과정이 아무리 지루하더라도 절대로 주의를 흘뜨려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힘에 대해 논해보자. 우선 목표를 달성하려면 적절한 수준의 힘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힘이란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만, 지나친 것도 독이 된다.

여성이 남성보다 협상을 더 잘한다는 사실은 힘과 능력이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스위스, 몰타 같은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보다 분쟁을 더 잘 해결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또한, 어린이가 어른보다 협상을 더 잘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협상은 잘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신이 가진 힘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파빌리온(전주형) 감옥 건축: 인천소년형무소



김용명

전 안동교도소장, 교도소연구소 소장

목차

1. 서
2. 경성감옥 인천분감
3. 인천소년형무소
4. 결어

참고문헌

1. 서

인천의 역사는 선사시대인 구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삼국시대에 미추홀이 있었다고 추정되며, 삼국시대에 고구려의 영토가 된 뒤로는 매소홀현(買召鰐縣)으로 불리다가 다시 신라의 영토가 되었고 경덕왕이 소성(邵城)이라 이름 지었다. 고려 시대에는 수도인 개성에 인접한 해안지역으로서 해양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였으며, 왕성(王城)을 보호할 목적으로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를 오늘날 부평인 수주(樹洲)에 두었다.

안남도호부는 시흥, 양천, 통진, 김포, 그리고 원인천(原仁川)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소성현(邵城縣)이 속해 있었다. 소성현은 고려 왕실의 외척을 배출하여 계속하여 지위가 격상되었는데, 고려 숙종 때에 경원군(慶源郡)으로 승격되었고, 인종 때에는 인주(仁州)로, 공양왕 때는 경원부(慶源府)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조선 개국한 후 태조는 다시 인주로 격하하였고, 태종이 고을 사이의 서열을 정비하면서 인천으로 격하하여 오늘날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 세조 5년 인천에 도호부를 두었으며, 병자호란 이후 효종은 강화도로 들어가는 우회로를 확보하기 위해 제물진을 구축하였다.

숙종 때에 이르러 제물진 앞 월미도에 행궁을 설치하고 방어를 강화하였다. 병인양요, 신미양요와 윤요호 사건을 거치면서 인천은 외세(外勢)와 직접 대면하는 곳이 되었다. 제물포조약 이후 6년이 지나 제물포가 개항되었고 청나라와 일본의 조계지와 서양 여러나라의 영사관이 제물포에 들어섰다. 그리고 관교동(문학동)에 있던 인천의 중심지가 개항에 따라 사실상 제물포로 옮겨지게 되었다. 제물포를 통한 교역 대상국은 청나라가 압도적이었으나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1906년 인천 내항을 축조하여 항구를 확장하였고,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인천은 일제 식민 통치의 중요한 항구가 되었다.¹⁾

경성감옥 인천분감²⁾은 1909년 2월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인계받은 감리청(監理廳)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개칭하였으며, 1923년 폐청이 되었다. 그 후 1936년 인천소년형무소가 근대식 건축물로 문학동에 신축되었다. 신축된 인천소년형무소는 우리나라에 건축된 최초의 파빌리온 감옥 건축양식(전주식)으로 우리나라 감옥 건축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위키피디아(2024년 2월 10일 접속)

2) 1912년 9월 기준의 경성감옥이 서대문감옥으로 개칭되면서, 인천분감 역시 서대문감옥 인천분감으로 개칭되었다.

2. 경성감옥 인천분감

인천부(仁川府)는 조선시대 23부제 아래 최고 지방행정구역이었으며, 1896년 23부제가 폐지된 이후 대한제국 시대에는 13도제 아래 경기도의 부로 인천군을 인천부로 승격하였다.

인천분감이 개청되기 전부터 인천에는 원형(圓形)의 전통 옥(獄)이 있었으며, 감옥은 내리(內里)에 있었다. 산마루에는 감리서(監理署)³⁾가 있고 그 왼쪽이 경무청, 오른쪽이 순검청이 있었으며 감옥은 순검청 앞에 위치하였다. 1909년 인천분감이 설치되면서 시설을 근대식 감옥으로 개축하였다.

〈인천분감〉



백범 김구는 1896년 2월 안악군 치하포에서 일본 중위 쓰치다(土田壤亮)를 죽이고 5월 2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인천감영에 투옥되었다. 같은 해 7월에 사형이 확정되었으나 사형 직전에 고종의 특사령으로 사형을 면하였으며, 1898년 3월 9일 탈옥하였다.⁴⁾ 탈옥을 하는 상황을 『백범일지』에 아래와 같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⁵⁾

“나는 적수 방에서 잡수의 방으로, 잡수 방에서 적수 방으로 왔다갔다하다가 슬쩍 마루 밑으로 들어가서 바닥에 깐 박석(薄石, 사각형으로 구운 옛날 벽돌)을 창 끝으로 들춰내고 땅을 파서 옥 밖에 나섰다. (중략) 나는 내가 나온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서 천연덕스럽게 내 자리에 돌아가 앉았다. 나는 눈짓으로 조덕근의 무리를 하나씩 불러 나가는 길을 일러주고 다섯 번째로 나가보니 먼저 나온

네 녀석들은 담을 넘을 생각도 아니하고 밑에 소복하니 모여 앉아서 벌벌 떨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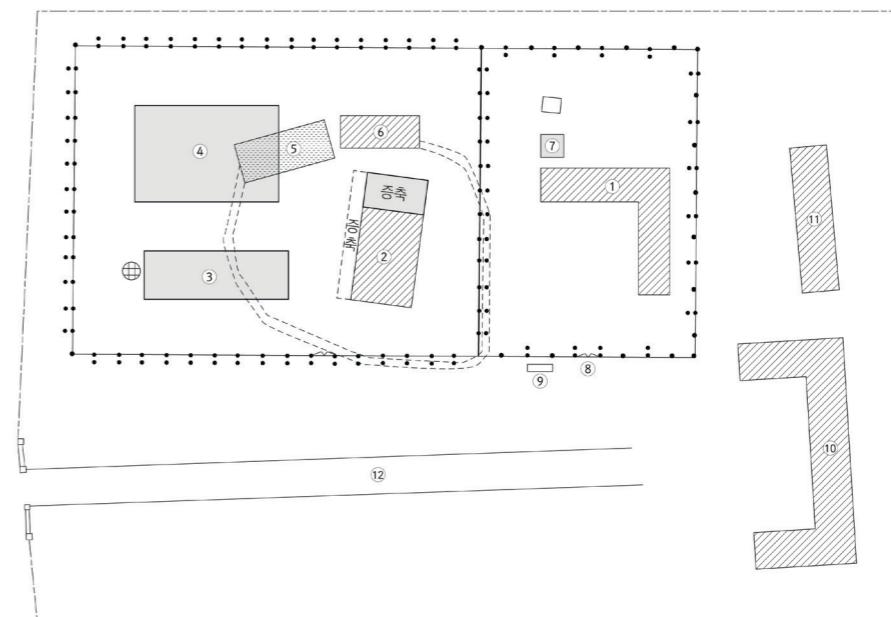
나는 한 명씩 궁동이를 떠받쳐서 담을 넘겨 보내고 마지막으로 내가 담을 넘으려 할 때 먼저 나간 녀석이 용동(龍洞)마루로 통하는 길에 면한 판장을 넘느라 월가닥거리고 소리를 내어 경무청(警務廳)과 순검청(巡檢廳)에서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비상 호각소리가 나오고 옥문 밖에서 통탕통탕하고 급히 달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직도 옥의 담 밑에 서 있었다. 옥문 열리는 소리, 죄수들이 떠들썩하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나는 죄수들이 물통을 마주 메는 한 길이나 되는 몽동이를 짚고 몸을 숫구쳐서 담 꼭대기에 손을 걸고 저편으로 뛰어넘었다. 이렇게 된 이상에는 내 길을 막는 자가 있으면 사생의 결단을 하고 결투할 결심으로 판장을 넘지 아니하고 쇠창을 손에 들고 바로 삼문을 나갔다. 삼문을 지키던 파수 순검들은 비상소집에 들어간 모양이어서 아무도 없었다. 나는 탄탄대로로 나왔다. 들어온 지 2년 만에 인천 옥을 나왔다.”

『백범일지』의 기록과 인천분감을 개축 도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역사를 알 수 있다. 아래 도면의 점선으로 된 부분이 흙벽으로 만들어진 옥의 담장이며, 6번이 구 교형장(絞刑場), 2번이 구 감방, 5번이 구 공작장(工作場)이다.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근대식 국가체제로 바꾸면서 감옥사무는 지방 경무청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당시 인천 옥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였다. 사형은 교형(絞刑)으로 집행하였고, 교형장이 담장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인천분감 배치도〉

구 감방은 3개 거실이 있었으며, 판자 바닥에 천정에는 종이를 붙여 마감처리하였던 것을 개축하면서 총 4개 거실로 늘리면서 천정까지 판자로 마감처리하고 처마를 판자로 이어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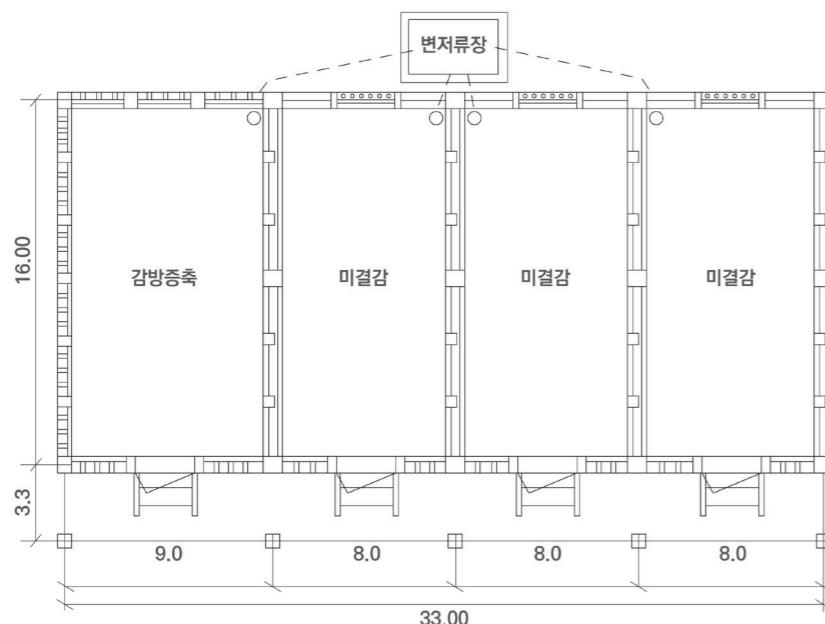
3) 감리서(監理署) : 조선말 개항장의 통상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4) 김구, 백범일지, 범우, 2023년 10월 5일, 318면.

5) 김구, 백범일지, 범우, 2023년 10월 5일, 110~111면.

〈인천분감 감방〉

구 사무소는 'ㄱ'자형 구조로 흙바닥 1실, 온돌 3실, 판자바닥 1실 등 총 4개의 거실이 있었으나, 개축시 사무실, 응접실, 창고, 간수휴게소, 탕비실, 화장실로 하였다.



〈인천분감 사무실〉

구 감방은 3개 거실이 있었으며, 판자바닥에 천정에는 종이를 붙여 마감 처리하였던 것을 개축하면서 총 4개 거실로 늘리면서 천정까지 판자로 마감 처리하고 처마를 판자로 이어붙였다.



〈인천분감 전경〉



3. 인천소년형무소

가. 소년행형 개관

1923년에 경성감옥 개성분감을 승격하여 개성소년형무소를 신설하고 이어서 경상남북도의 소년수형자를 집금해 온 대구감옥 김천분감을 승격하여 김천소년형무소를 설치하였다. 개성소년형무소에는 18세 미만의 남자 소년 및 이에 준하는 자를 수용하고, 김천소년형무소에는 연령 20세 미만 남자 청년 및 이에 준하는 자(최근에는 형기 1년 이상의 자에 한한다.)를 전국에서 집금하였다. 연령 18세 미만의 여자 소년 중 형기 8월 이상의 자는 서대문형무소에 집금하였다. 그 후 개성소년형무소의 수용인원이 급증하여 열심히 설비의 확장과 개선에 노력하였지만 정원의 2배 정도를 수용하는 상황이어서 소년형무소 증설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이어서 1934년 예산에 그 경비를 반영하여 인천에 신축공사에 착수하였으며 1936년 7월에 개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인천소년형무소에는 연령 18세 미만, 형기 1년 이상의 초범자로 학력이 보통학교 3학년 졸업 정도 이상을 집금하였다.

나. 인천소년형무소의 건축적 특성⁶⁾

1) 수려(秀麗)한 양식

우리나라에서 근대식 감옥 건축은 1907년 11월 완공되어 다음 해인 1908년 10월에 수용을 개시한 경성감옥(1912년 서대문감옥으로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1910년 대구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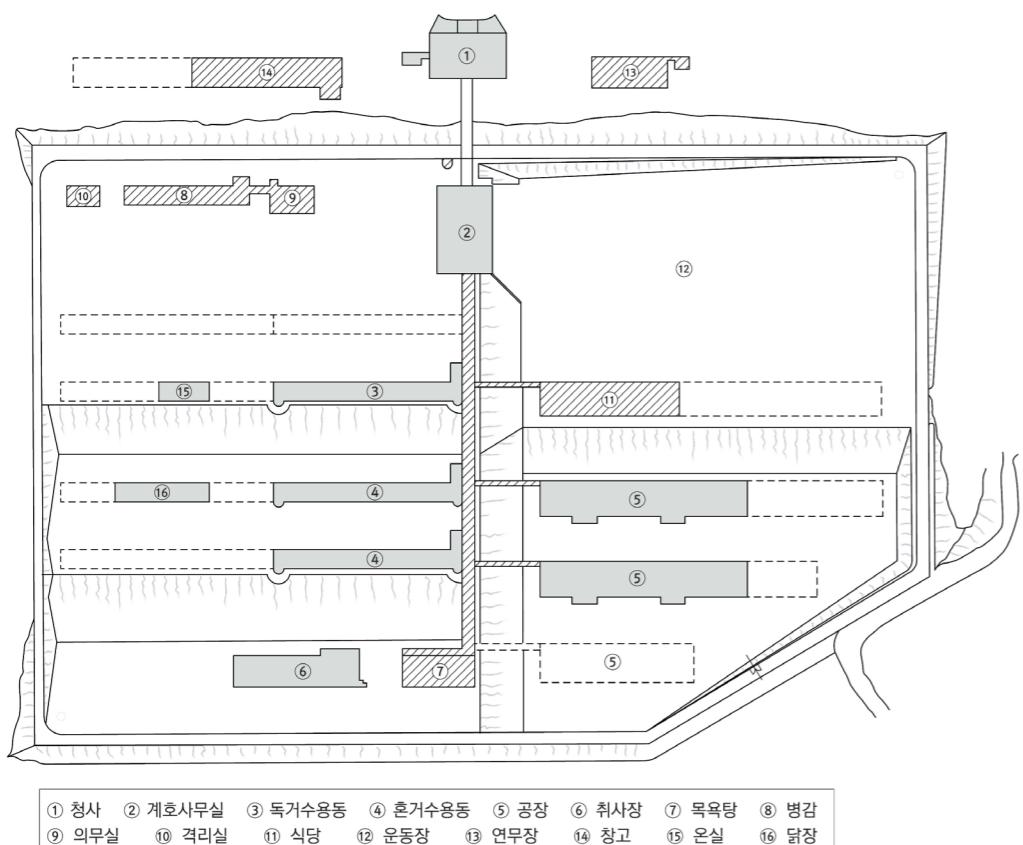
6) 治刑, 15권 5호, 1938. 5. 1. 2~17면.

옥과 평양감옥이 건축되었다. 이어서 1912년 마포구 공덕동(현 서부지방검찰청 자리)에 경성감옥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모범감옥(Model Prison)의 형태로 건축되었으며 이러한 건축양식은 1936년 인천소년형무소가 건축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20년을 지난면서 당시 행형의 흐름은 수형자를 수형자로 구금하는 흐름을 포기하고, 1925년 런던국제형무회의에서 영국 내부대신 힙스가 “수형자를 감옥에 수용하는 것에 의해 국가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함에 의해 이제부터 국가의 의무가 수행되어야 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주장한 이래 수형자를 구금하는 것에 대해 현대 문화국가는 ‘인간으로서 처우’해야 한다는 것이 요청되었다.

교육 행형의 기본사상은 인간으로서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출발점을 가진다. 1928년 국제형법 및 감옥위원회의 초안인 「수형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원칙」은 감옥 건축상 많은 시사를 주었으며 일자형 형태인 파빌리온 양식이 각국에서 근대적 행형건축의 주류로 건설되기에 이르게 되었다. 파빌리온 건축양식은 194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 미국 교도소 건축의 기본 형태로 자리잡았으며 이 시기를 1세대라고 평가하고 있다.

<인천소년형무소 배치도>



인천소년형무소는 완전한 병렬형 단방(單房)식으로 채광, 채난(採暖)에 있어서 구분이 없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비난할 점이 있더라도 장래 행형 건축의 모범이 되는 점이 많았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교육 행형에 적합한 행형 건축에 대한 사회의 무이해에 따르는 것을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 형무소의 새로운 서비스를 너무 화려하게 하면 형무소에 자원하는 자가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사회의 하층계급자의 생활내용과 비교하여 비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수형자는 누구라도 인간이라는 것이다. 즉 문화국가가 자신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위해 병원을 건축하고, 의료설비를 완비해야 하는 것이 자기방위이자 동포에 대한 의무이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문화국가는 자신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인을 구금하는 형무소를 건축하고 그들을 선도교화해야 하는 기관을 완비하는 것이 국가의 자기방위이기도 하고, 동포에 대한 의무가 되어야 한다. 형무소는 수형자를 다시 사회에 내보면서 그들이 장래 국가에 공헌할 수 있도록 심신을 치료해야 하는 병원이자 학교이다. 거실은 그를 위한 병실이자 기숙사이다. 공장과 교회당은 그들을 위한 치료실이고 교육장이다.

관공립 학교와 환자를 위한 설비인 병원에 대해 국가가 지출하는 금액이 거액이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된다. 교육형주의의 행형은 종래의 시설 하에서 단순히 인적교화만에 의해서는 달성할 수 없다. 매질 아래서만 교육을 하는 것의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하적인 시설에서 윤리도덕을 가르쳐 정조(情操)를 도야(陶冶)하는 것은 형식만의 것으로 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미에서 물적교화시설의 개선은 당연한 요구이다.

2) 청사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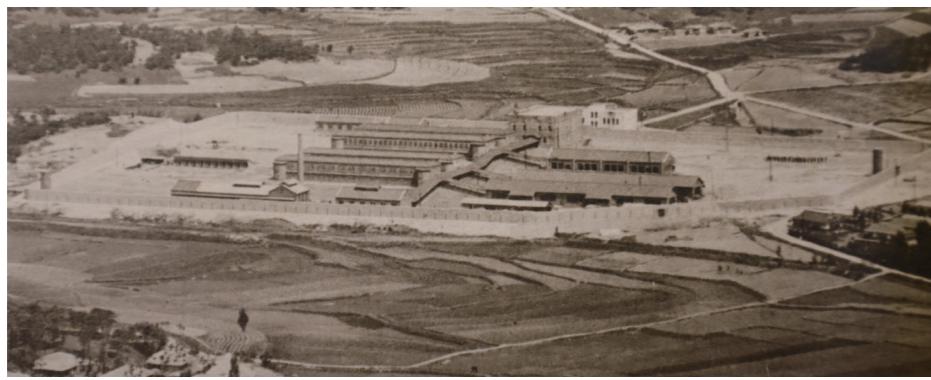
가) 청사의 주벽 밖 배치

행형의 사회화는 두가지 방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하나는 형무관리와 사회와의 교류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 의미에서 형무관리는 소질에서 사회 사정에 정통하는 것이 요구되고, 시세(時勢)의 추이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교육자가 되어야 할 형무관은 오늘날 행형의 기본 사상에 정통하고 내일의 행형에 약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제의 사회에 적응하는 것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회인을 만들어 내는 우를 무의식의 뒤에서라도 반복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형무관인 우리는 인격의 연마와 함께 시세에 뒤떨어진 붉은 벽돌촌의 주민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두번째는 형무관리와 사회와의 교류를 위해 형무소인 관청과 사회와의 절충과 균형을 한층 더 밀접하게 하는 것이다. 행형 기관을 엄격하게 철문과 외벽 아래에 마주 세우는 동안에는 교육상 온실 내의 행형으로 비난받고, 붉은 벽돌 마을의 주민으로 사회로

부터 멸시를 받는다. 따라서 지역으로부터 보다 활발하게 사회와 접촉을 구하고 이해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청사를 외벽 밖으로 진출시키는 것은 행형 사회화의 하나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수형자와 사회와의 교류 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수형자가 직접적으로 사회와 접촉하는 접견통신에서 제한의 완화를 가져오는 것, 특히 누진처우시행 후의 사회적 훈련에의 처우와 같이 수형자로서 사회복귀를 용이하도록 하는 것은 행형 사회화의 한 방면으로서 간과할 수 없다.

〈문학산에서 본 인천소년형무소 전경〉



행형의 사회화라고 하는 대임무를 가지는 청사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건축상 배치로서 완전하게 계호구역과 분리된 곳은 부산형무소와 인천소년형무소 뿐이다.

당시 행형의 흐름에서는 행형 진화의 척도로서 행형 건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그중 청사의 위치는 십수 년 아래의 문제로서 주의를 끌어 온 바로 종래 출입 상인조차도 쉽게 청사에 출입할 수 없는 상태인 형무소(예를 들면 서대문형무소, 경성형무소와 같음)가 많았고, 이에 대해 신축과 이축에 있어서는 점차 연구되었으나 인천소년형무소와 같이 행형 구역과 청사구역을 완전히 분리한 것은 달리 그 예를 볼 수 없었다.

나) 접견실

접견에 관해서는 격리작용에 여전히 중요함이 두어져 있었다. 행형의 임무가 수형자를 개선함으로써 장래의 사회를 방위는 것에 있다면 접견실의 칸막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나아가 철망도 격자문 설치 조차도 불필요하다.

1927년 독일행형법 초안에는 보안 또는 기율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수 없는 경우에만 접견자와 수형자를 분리하거나 또는 수형자 및 접견자의 감정을 해하는 것과 같은 설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1923년 독일 자유형 집행에 관한 원칙 제 117조와 같이 접견실 설비에 대해서는 수형자 또는 접견자의 감정을 해하는 것 같은

설비를 피하는 것으로 하여 인간 다음에 도움이 되는 생활의 보장을 접견소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행형에서 충분히 고려를 기울여야 할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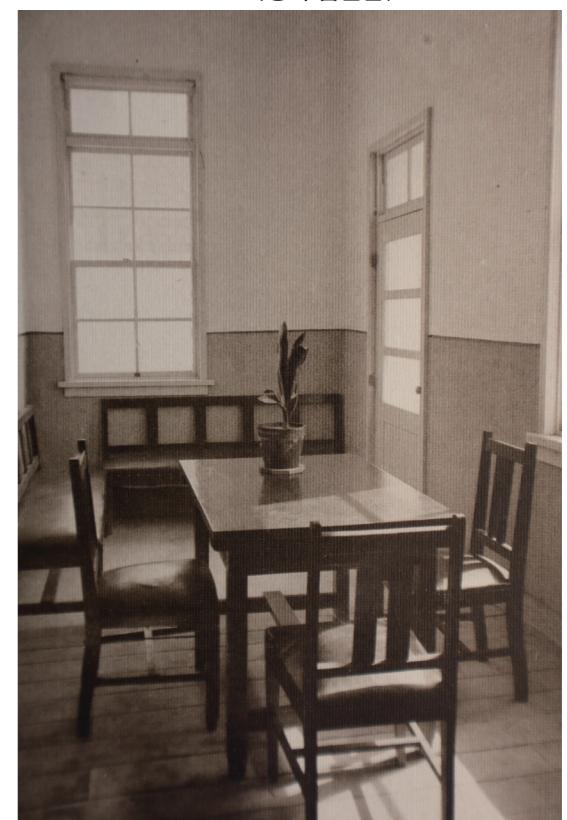
접견실 위치에 관해서는 종래의 관념에 따라 행형 구역 내에만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행형 구역 외에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되었다. 인천 소년형무소에서는 행형 구역 외에 해당하는 청사의 한 쪽에 접견실을 두고 소년수형자의 사회 적응성을 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하고 외래자의 명예와 인격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것 같이 최선의 주의가 기울여지고, 부모의 정에 어떠한 마음의 방해없이 접견을 실시하는 것은 커다란 혁신적인 일로서 기록되어야 할 점이다.

그리고 접견실 내부 구조는 다른 사무실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외부에 철격자조차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실내에는 꽃병과 책상 및 조잡하지만 종래 수형자 특유의 의자를 없애고 통상이 의자가 마련되어 있으며, 측면 벽에는 따뜻한 정이 넘치는 보호자에 대한 표어조차 붙어져 있다. 이렇게 하여 보호자의 방문을 기다리고 가족 사랑에 의해 본연의 인간성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배려를 시행하고 있다.

다) 백악(白堊)의 전당

붉은 벽돌이라고 불리는 명칭은 유럽에서 형무소에 준 존칭이다. 벌거벗은 붉은 벽돌에는 행형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할 수 없고 건축 전체의 종합적 아름다움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적어도 완성의 미를 얻기 위해서는 착색의 아름다움을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인천소년형무소에서는 주요 벽돌 건물에 대해서는 외부의 착색을 실질을 주된 목표로 하여 자연 몰타르 색으로 하고, 청사는 엘리크루트 도색의 흰 전당으로 하였다.

〈청사 접견실〉



3) 건축배치상 특징

가) 부지면적

부지면적은 형무소의 성질에 따라 다른 것은 물론이지만 그 토지가격에 따라 좌우되는 점도 분명히 있다. 구치감은 거실과 약간의 부속건물로 충분하고 운동장 설비도 광대 할 필요가 없다. 작업이 중심인 형무소에는 공장에 대한 작업 재료의 창고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작업 종류의 여하에 따라서도 상이한 바가 많다. 소년형무소는 성년형무소와 비교하여 부지면적에 필요로 하는 상당한 고려가 기울여져야 한다.

오늘날 행형의 흐름에서는 소년수형자의 정서함양을 위한 화원(花園, 꽃밭), 체육에 필요한 상당한 운동장 설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소년형무소 부지는 총면적 49,000평, 행형 구역 12,000평으로 하고 이상적인 수용정원 500명, 최대수용인원 800명으로 하여 최대수용인원으로 하여도 1인 평균 15평으로 하여 구체적 표준평수를 충족하고 있다. 이를 예를 들면 서대문형무소 행형 구역 16,000평은 청사, 창고, 구치감, 사무소를 그 구역 내에 포함하는 것으로 인천소년형무소는 청사 및 창고의 일부를 행형 구역 밖에 배치하는 등의 점을 고려하면 총면적에서 거의 같은 크기라고도 해야 하고, 그래도 수용인원의 관계를 대비할 때 인천소년형무소 부지는 확실하게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소년형무소 체육을 위해 2,000평의 운동장을 설치한 것은 일본에서 조차 그러한 것을 볼 수 없었다.

〈운동장 및 체조〉



나) 건물 배치

건물 배치는 행형 운영상 간과할 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사 위치가 담 밖에 진출한 것은 형무소의 사무적 중심이 외부 사회와의 교섭을 하

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과 구내의 전체 중심에 해당하는 계호력의 중추부인 계호사무소와 함께 교화력의 중추부인 교화사무소를 중심으로 하고 수용동, 공장을 배열하여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건물 배치에 대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수용동의 배치이다. 종래부터 형무소 건물의 배치 방식은 수용동 배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행형의 진보와 함께 행형 사조의 변천에 동반하여 수용동 배치 형태는 다양하게 고려되었지만 18세기 이후는 주로 파놉티콘식과 파빌론식 및 카티지시스템의 세 가지가 행형 건축상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 다른 건축물이 행형의 경영관리를 대상으로 하여 편리함과 불편함을 중심으로 하여 배치되고 있는 것에 반해, 수용동 배치는 단순히 구금의 편리함과 불편함만을 문제로 하지 아니하고 수형자로 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어떠한 배치를 하는지의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 있다.

첫 번째 파놉티콘 시스템은 펜실베니아제 구금 방법의 발전과 함께 세계를 풍미(風靡)한 독거분방제를 행형의 중심적 사조로 하는 시대에 혼거제를 폐하고 분방제로 함에 따라 생겨난 국가재정적 견지와 계호시찰의 편리를 고려하고, 경제학자 벤담에 의해 고안된 것이다. 일본의 과반수의 형무소가 대체로 이 형태에 따라 건축된 것은 메이지(明治)시대의 분방제의 발달의 남겨진 유물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태양광선을 얻기 어려운 것은 단순히 위생상의 견지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불충분한 근거 뿐만 아니라 태양 광선을 받아서 따뜻함을 취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의 권리로 자유형을 받고 있는 수형자에 대해 국가의 재정도 계호력의 감퇴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자유형은 자유를 구속하는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자연의 은혜에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고려된 것이 파빌리온 시스템, 즉 병렬형이다. 파놉티콘 시스템이 붕괴되고 파빌리온 시스템이 이에 대신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근대 행형 교육의 기본은 수형자 지위의 확립을 요청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파빌리온 형태의 배치는 행형기관의 하나인 형무소의 가장 발달된 양식이다.

인천소년형무소는 이 형태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가 가진 세계에 하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의 카티지 시스템은 물적 계호능력을 가능한 한 완화하고 수형자의 자제력 및 정신적 교화의 힘에 의해 구금을 유지하며 수형자를 가능한 한 자유사회에 가까운 상태에서 교육함으로써 참된 사회적응력을 기른다는 취지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소수인원을 수용하는 가정과 같은 기숙사가 주택지와 같은 모양으로 점점이 만들어져 있고, 각 기숙사에서는 그 지도관에 해당하는 호주(戶主) 아래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지도받는 조직으로 하며, 창에 철격자도 없고 벽도 없고, 감시탑도 없는 것이 통상적이 다. 파빌리온형에 대해서도 건축양식은 단방식 병렬형과 복방식 병렬형이 있다. 전자는 가장 이상적인 양식으로 북측에 복도를 두고, 남쪽에 거실을 배치하여 광선을 받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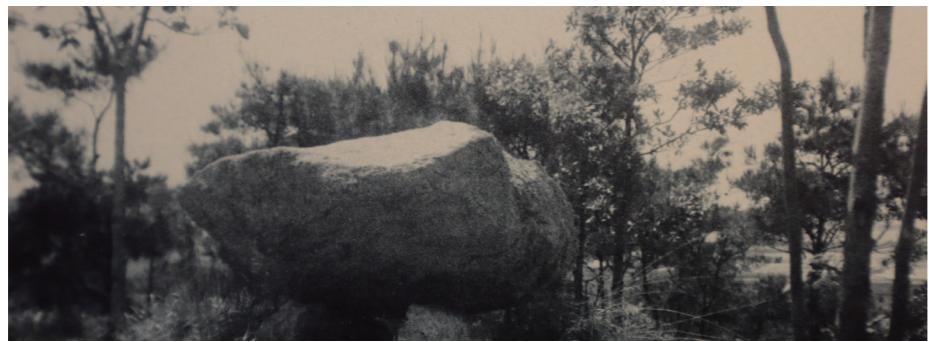
하는 것은 수형자 각자에 대해 평등하고 공평한 것에 반해, 복방식 병렬형은 거실은 동서 양쪽 날개에 존재하고 중앙에 복도를 두는 것으로 하여 파놉티콘 시스템과 비교하여 광선을 받는 것에 있어 공평타당함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인천소년형무소는 가장 이상적으로 하기 위한 남쪽 단방식 병렬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수용동뿐만 아니라 공장도 남쪽으로 하고 북축에 복도를 두어 채광과 난방에 구분이 없도록 하였다.

다) 지세(地勢, 지형)의 환경

민족의 성격은 자연이 가지는 산과 물의 영향을 받는 바가 많고 크다. 환경은 사람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수형자를 자연에 의해 교육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이상의 것은 없다. 그렇지만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수형자는 자연에 친해지는 것만으로써 사회적응성을 기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어떠한 형무소도 도시에 존재하는 이유의 하나는 이것이다. 따라서 산과 물의 아름다움, 옛 역사에 풍부한 땅은 소년수형자의 교육에 있어 가장 좋은 토지적 환경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인천소년형무소가 위치한 곳은 선주민족 시대부터 개척된 토지로 부지 서쪽 구릉에는 고인돌 5기가 있고 비교적 옛날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큰 규모에 대해서는 역사가, 고고학자가 유람(遊覽)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소재지 문학면(文鶴面)은 옛 고구려 시대 미추왕이 영도한 땅이었고, 신라 때 소성(邵城)이라 바꾸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왕후가 나온 지역이었기 때문에 군주부(郡州府)로 승격하고 부근의 관교리(官校里)는 구 인천부사의 소재지로서 현재 인천부는 이미 당시 인천의 한 부분으로 지나지 아니하였다.

〈지석묘〉



인천소년형무소에서 가까운 문학면 보통학교 입구에는 5개의 송덕비(頌德碑)가 있어 모두 인천부사, 인천관찰사 등의 기록을 볼 수 있고, 부근에 연꽃연못과 정자가 있으며 옛날 시와 노래, 악기에 심취하였던 것 같다. 옛날 이 지방에 거주한 민족은 부여족

으로 그 선조는 남만주지방에서 출발하여 점차 조선에 들어와 고려족이 되었고 백제 민족이 되었다고 하며 고승 대각국사(大覺國師)가 노는 것도 이 땅이었다. 인정과 풍속은 도시에 인접함으로써 부모를 존경하고, 장유의 순서가 잘 지켜지며, 자식은 부모에게 젊은이는 연장자에게 절대 복종하고, 일의 대소는 부모와 형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외에 관의 명령을 존중하고 혈족이 서로 결혼하지 아니하고 유교의 도아에 익숙한 미풍양속을 보존해야 할 것이 적지 아니하다. 바닷바람과 청정(淸澄)한 공기는 정말 건강에 적당하다. 남쪽방향에는 가까이 10정 정도에 문학산인 산이 있다. 수용동에 앉아서 소년의 눈에 비치는 산은 백제의 시조 온달왕의 형 불류(佛流)가 수도로 한 곳으로 산 정상에 성 유적이 있고 소위 신라 소성의 유적으로 당시 봉수가 있어 사변이 일어나면 횃불을 올려 위급함을 소초산(素炒山), 남산을 거쳐 경성과 사방으로 알리는 것으로 하여 외적에 대한 유일한 감시로 되어 있다. 이 문학산의 정신은 토지의 미풍양속과 함께 인천소년형무소의 소풍(所豐)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으로 하여 흰 구름이 낮게 드리울 때 산록의 노송이 무성한 자연의 미는 강하게 소년의 마음을 때리는 것이다.

〈인천소년형무소와 문학산〉



만약 형무관리의 사생활을 보면 인천소년형무소 정도로 이상적인 토지는 없다. 관사와 부근 형무관리의 주택이 도심으로부터 현저하게 떨어진 것에 대해 세상과 떨어진 형무관에 의해 적절한 행성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반대론조차 있다. 인천소년형무소이 자리적 위치는 인천역은 1리 10정 정도, 주안역은 30정 정도, 수인선에는 같은 1리 20정을 요하는 토지로 하여 교통의 불편 그 이상은 없고 불과 하루 세 번 왕복하는 버스만을 유일한 교통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등의 악조건 하에 있지만 다른 면으로 소년수형자를 위한 토지적 환경은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혜택받은 것이고 또한 문학산 산기슭에 소재하는 관계상 지하수는 상당히 많고 구내에는 파우물과 간이수도를 설치하여 물에 대한 걱정은 없다. 토지의 높고 낮음은 수용동지대는 수면 170척의 땅에 병사, 독거수용동 지대를 설치하고, 190척 땅에 혼거수용동 2동을 설치하고, 97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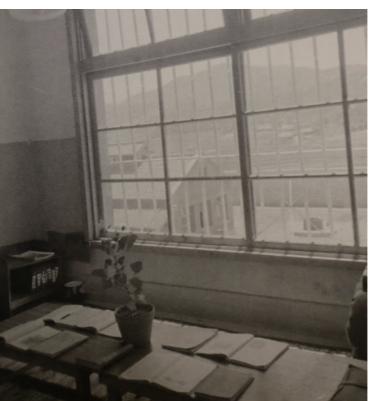
땅에는 취사장과 목욕탕을 설치하고 있다. 남쪽면에는 경사를 이용하여 배수의 편리와 채광과 채난의 은혜를 한층 크게 한 것이다. 수용동, 병사지대는 지반이 강고하여 습윤(濕潤)이 전혀 없어서 소년의 주거지로서는 최적의 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거실 내부의 특징

가) 공기 면적, 채광, 채온, 통풍 등

병렬형에 해당하는 수용동 배치를 하고 창의 밝음과 변기 문제에 대해 명쾌한 해결을 거둔 것은 인천소년형무소이다. 거실은 수형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그것은 침실이고 위안의 장소이며 그리고 수양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행형 건축가의 한 사람은 거실을 가리켜 ‘대화와 외출의 자유를 제한받는 독신자 아파트이다’라고 부르고 별장 호텔의 별명은 누범자들에게 통용어조차 되어있다고 한다. 어떻든 거실은 가정의 거실이어야 한다는 것을 최대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실내를 어둡게 하거나 통풍을 나쁘게 할 필요는 조금도 없고 무엇보다도 밝고 환하게 하고 가지런한 것이어야 한다. 인천소년형무소는 독거방 공기 면적(氣積) 약 3.7평방미터(1.24평), 혼거방 공기 면적 약 22평방미터, 면적 평면적 8.3평방미터이다. 특히 거실의 환기문제는 단순히 그 내법(內法) 공기 면적만으로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기의 유무, 책상 그 밖에 다른 잡구류가 차지하는 면적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바가 크다. 또 한편 거실 내의 공기오염에 대한 환기 방법 여하도 관계하는 바도 매우 크다. 특히 거실의 환기문제는 난방장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추운 야간이 문제가 된다. 즉 위생상 이해를 하여도 추위를 어떻게 국한시킬가의 문제가 수형자에게 있어서는 중대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채광면적으로 잡거방에서는 남쪽에 3.9평방미터, 북쪽에 1.8평방미터, 독거방에서는 남쪽에 1.9평방미터, 북쪽에 0.4평방미터를 두고 있다. 모두가 태양광선을 직접 받도록 채난설비도 겸하고 있는 것이다. 북쪽의 채광면적은 또한 동시에 복도에 접속되어 있는 관계상 통풍에 이용되고 있다.

<혼거실>



<독거실>



나) 변기 문제 해결

감옥의 좋지 않은 문제는 행형 위생상 중대한 문제이다. 감옥 냄새라고 하는 말은 석방자에게 주는 별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 정도로 형무소는 냄새가 있는 곳이라고 조차 의심을 하고 있다. 사실상 감옥 냄새는 거실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감옥 냄새를 분석하면 땀 냄새와 체취와 그와 함께 화장실 냄새의 세가지가 혼합된 것이지만 수십 년도 안되어 벽에 스며든 것이 감옥 냄새이다. 땀 냄새는 목욕의 개선과 함께 해결되고, 체취는 식량의 문제로 하여 해결을 찾는 것인 것에 반해 화장실 냄새의 문제는 완전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 화장실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자고 일어나고, 학습을 하는 것이 교육형의 기본문제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아직 해결을 찾을 수는 없었으나 인천소년형무소는 명쾌한 혁신적인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가 가진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변기에 관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 단계를 거쳐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로 계호에만 중점을 두는 시대에는 거실에 변기를 두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아직 이와 같은 형무소는 상당히 있다. 그리하여 협소한 거실을 한층 더 좁게되고 그리고 변 냄새가 심하고, 식사마저 해야 하는 거실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며, 위생상 또 인도상 도저히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위생상 견지에서 이것을 개선한 시대로 차입식에 의한 변기이다. 거실 밖으로부터 차입되는 변기는 거실의 한쪽 구석에 작은 구멍으로부터 이어지고 평상시에는 덮개를 하여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변 냄새는 심하고 여전히 감옥 냄새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수세식 변기가 고안되기에 이르렀다. 이 수세식 변기는 배변할 때마다 다량의 물로 강하게 흘려 관을 통해 오수정화조에 정체없이 보내는 장치이다. 이에 의해 변을 모으는 노고와 그에 부수하는 위생적 불안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단계에 달하였다. 그렇지만 이 정화장치는 막대한 경비를 요하는 동시에 매우 추운 지역의 배수 결빙은 이것의 실시를 불가능하게 한다. 동시에 아직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변소를 앞에 두고 앉아서 하는 생활은 해결되지 아니한다. 세 번째로 교육형주의의 기본문제로서 물적교화에 중점을 둘 때 변기를 거실 밖으로 내보내는 고안에 도달하였다. 변기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변기를 베개로 하는 생활은 인간으로서의 처우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것으로 거실에 변기가 없는 생활 이야기로 문화인의 생활이라고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의미에서 인천소년형무소의 거실은 기숙사와 마찬가지로 거실 밖에 공동변소를 설치하여 변 냄새가 거실 내 흘어져 넘치는 것을 방지하고 소년수형자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하였다. 다른 한편 계호자의 걱정을 과중하게 하는 것으로 야간에도 개문이 필요하고, 병렬형의 의한 배치의 중원에 있어 더욱 이 점에 관한 주의를 한층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었지만 현재 인천소년형무소는 이 혁신적 사업에 대한 하나의 시범기관으로 직원의 책임이 크게 되었다.

<수용동 화장실>



지난해 중 가장 추운 때에 취침 시부터 기상 시에 걸쳐 측청(廁圃) 횟수를 조사하였는데 1인 평균 0.8회, 즉 간수 1인당 수용인원 170명에 대해 실로 야간 돌봄은 300회라고 하는 많은 횟수에 이르렀지만 계호자는 능히 이 고난을 극복하여 현재는 그다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실시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성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수형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횟수가 많을 때는 제일로 추위와 더위의 차이에 영향받는 것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의심할 바 없으며, 침구가 불완전하고 난방설비를 완전히 결여한 것에 원인도 있다. 두 번째로 음식물이 내용이다. 식비 예산의 관계상 음수량을 다량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가 많고, 이에 영향받는 바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세 번째로 습관성에 의한 것이다.

4. 결어

감옥 건축양식과 관련하여 인천소년형무소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파빌리온 형태로 건축되었다. 그러나 인천소년형무소의 파빌리온 건축양식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축되고 있는 파빌리온 형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6.25전쟁으로 대구형무소, 부산형무소, 마산형무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형무소가 파괴되었으며, 각 형무소는 전쟁이 미처 끝나기 전에 UN으로부터 캐나다산 목재를 원조 받아 원래 있었던 자리에 식민지 시대에 건축된 근대식 감옥 건축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여 방사형으로 건축되었다. 1962년 공덕동에 있었던 마포형무소(현 서부지방검찰청 자리)가 안양으로 이전하면서 파빌리온 형태로 건축되기 시작하면서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공주교도소 등 70년대와 80년대에 각 교도소는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파빌리온 형태로 건축되었으며, 지금도 신축되고 있는 교정시설은 파빌리온 형태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920년대까지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감옥 건축이 시행되었으나 방사형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다. 방사형은 직원의 감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벤담이 고안한 파놉티콘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29년 1월 국제

형무위원회는 「수용자 처유규칙(Ensemble de Règles pour le Traitement des Prisonniers)」을 제정하여 각국의 의견조회를 한 후 채택하였다. 본 규칙에서 수용자의 건강에 대한 고려가 규정으로 만들어졌으며 국제적인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로 인해 그 당시까지 방사형, 일자형, 중정형, 사각형 등 다양한 감옥 건축형태가 혼재하면서 발전하고 있었으나 그중 수용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채광과 통풍에 가장 적합한 감옥 건축형태인 파빌리온 양식이 세계 감옥 건축의 주류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파빌리온 형태를 1세대 교도소 건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1970년대 말까지 미국 교정시설 건축의 주된 형태를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제3세대, 제4세대의 교정시설이 건축되고 있다.

감옥 건축이 내포하고 있는 철학은 방사형에는 직원의 감시이고, 파빌리온형에는 수용자의 건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수용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감옥 건축과 관련하여 성인교정시설 설계지침을 마련하였으며, 그후 제2세대, 제3세대, 제4대 교정시설을 건축하면서 세계 교정시설 건축을 주도하고 있다. 제1세대로 분류되고 있는 파빌리온형태는 수용자의 건강에 대한 배려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직원과 수용자의 분리는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기본 철학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오늘날 발달된 건축기술을 통해 자연적인 채광과 통풍에 의한 수용자의 건강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공조기술과 시스템 난방 설비 등을 수용자에게 보다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2세대 교정시설부터는 직원과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교정시설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된 공간에서는 수용자는 직원을 존경하고, 직원은 수용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재사회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노력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우리나라의 교도소가 재사회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잘 운용되어 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첫째, 교정시설은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 일반사회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종합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디자인을 전공한 전문가가 교정시설 건축설계를 주도하면서 민간의 설계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교정시설 건축에 실제 사용자인 교도관의 경험과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질병에 대한 국가의 대응과 마찬가지로 범죄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존재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시설을 건축하고, 전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용명, 교정학, 박영사, 2021년 2월 25일

김구, 백범일지, 범우, 2023년 10월 5일

인천소년형무소, 낙성 기념 사진첩, 일본교정협회 소장, 1938년 3월

内山隆治, 仁川少年刑務所の物的教化施設, 治刑, 15권 5호, 1938. 5. 1.

Norman Johnston, A History of Prison Architecture, 2000년

수용자 징벌 사유의 미수 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하)



윤동호

청주교도소 보안과 교위

목차

- I. 서론
- II. 징벌 사유의 미수 규정 필요성
- III. 징벌 규정의 분석과 외국의 사례
- IV. 개선방안 : 미수 규정 신설
- V. 결론

III. 징벌 규정의 분석과 외국의 사례

2. 외국 징벌 규정의 미수 규정

〈표 4〉 캐나다 연방교정청의 수용자 징계 위반 보고서의 뒷면

<p>INSTRUCTIONS – DISTRIBUTION</p> <p>This form is to be completed by any staff member, contractor, or employee of a contractor and submitted to his/her supervisor or the officer in charge of the institution. It is then forwarded to the Institutional Head or his/her delegate to determine if a charge is warranted and, if so, the category of the offence. The date of the disciplinary hearing shall be indicated.</p> <p>The WHITE COPY is placed on the inmate's Discipline and Dissociation file.</p> <p>The CANARY COPY is given to the inmate indicating the disposition of the court and the sanction awarded if applicable.</p> <p>The GOLDEN ROD COPY is given to the submitting staff member within two working days of the charge being laid.</p> <p>The PINK COPY is given to the inmate, within two working days of the charge being laid.</p> <p>The COPIE JAUNE est remise au détenu afin de l'informer de la décision du tribunal et, s'il y a lieu, de la sanction imposée.</p> <p>La COPIE OR est remise au membre du personnel qui effectue le partage, dans les deux jours ouvrables suivant la mise en accusation.</p> <p>La COPIE ROSE est remise au détenu dans les deux jours ouvrables suivant la mise en accusation.</p>	
<p>DISCIPLINARY OFFENCES (CCRA) 40. An inmate commits a disciplinary offence wh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disobeys a justifiable order of a staff member; (b) is, without authorization, in an area prohibited to inmates; (c) wilfully or recklessly damages or destroys property that is not the inmate's; (d) commits theft; (e) is in possession of stolen property; (f) is disrespectful toward a person in a manner that is likely to provoke them to be violent or toward a staff member in a manner that could undermine their authority or the authority of staff members in general; (g) is abusive toward a person or intimidates them by threats of violence or other injury will be done to, or punishment inflicted on, them; (h) fights with, assaults or threatens to assault another person; (i) is in possession of, or deals in, contraband; (j) without prior authorization, is in possession of, or deals in, an item that is not authorized by a Commissioner's Directive or by a written order of the institutional head; (k) takes an intoxicant into the inmate's body; (l) fails or refuses to provide a urine sample when demanded pursuant to section 54 or 55; (m) creates or participates 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a disturbance, or (ii) any other activity that is likely to jeopardize the security of the penitentiary; (n) does anything for the purpose of escaping or assisting another inmate to escape; (o) offers, gives or accepts a bribe or reward; (p) without reasonable excuse, refuses to work or leaves work; (q) engages in gambling; (r) wilfully disobeys a written rule governing the conduct of inma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r.1) knowingly makes a false claim for compensation from the Crown; (r.2) throws a bodily substance towards another person; or (s) attempts to do, or assists another person to do, anything referred to in paragraphs (a) to (r). 	<p>INFRACTIONS DISCIPLINAIRES (LSCMLC) 40. Est coupable d'une infraction disciplinaire le détenu qui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désobéit à l'ordre légitime d'un agent; (b) se trouve, sans autorisation, dans un secteur dont l'accès lui est interdit; (c) détruit ou endommage de manière délibérée ou irresponsable le bien d'autrui; (d) commet un vol; (e) a en sa possession un bien volé; (f) agit de manière irrespectueuse envers une personne au point de la rendre possiblement violente ou envers un agent au point de compromettre l'autorité de celui-ci ou des agents en général; (g) agit de manière outrageante envers une personne ou l'intimide en menaçant d'être violent envers elle, de la blesser ou de lui infliger une punition; (h) se livre ou menace de se livrer à des voies de fait ou prend part à un combat; (i) est en possession d'un objet interdit ou en fait le trafic; (j) sans préalable, en possession d'un objet en sa possession un objet en violation des directives du commissaire ou de l'ordre écrit du directeur du pénitencier ou en fait le trafic; (k) introduit dans son corps une substance intoxiquante; (l) refuse ou omet de fournir l'échantillon d'urine qui peut être exigé au titre des articles 54 ou 55; (m) crée des troubles ou toute autre situation susceptible de mettre en danger la sécurité du pénitencier, ou y participe; (n) commet un acte dans l'intention de s'évader ou de faciliter une évasion; (o) offre, donne ou accepte un pot-de-vin ou une récompense; (p) sans excuse valable, refuse de travailler ou s'absente de son travail; (q) se livre au jeu ou aux paris; (r) contrevenant délibérément à une règle écrite régissant la conduite des détenu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r.1) présente sciemment une fausse déclaration pour dédommager par la Couronne; r.2) lance une substance corporelle vers une autre personne. (s) tente de commettre l'une des infractions mentionnées aux alinéas (a) à (r) ou participe à sa perpétration.
<p>DISCIPLINARY OFFENCES (CCRA) 44. (3) An inmate who is found guilty of a disciplinary offence is liable t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a warning or reprimand; (b) a loss of privileges; (c) an order to make restitution, including in respect of any property that is damaged or destroyed as a result of the offence; (d) a fine; (e) performance or extra duties; and (f) in the case of a serious disciplinary offence, segregation from other inmates — with or without restrictions on visits with family, friends and other persons from outside the penitentiary — for a maximum of 30 days. 	<p>INFRACTIONS DISCIPLINAIRES (LSCMLC) 44. (1) Le détenu déclaré coupable d'une infraction disciplinaire est passible d'une ou plusieurs des peines suivantes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avertissement ou réprimande; (b) perte de priviléges; (c) ordre de restitution, notamment à l'égard des biens qui sont endommagés ou détruits en raison de l'infraction; (d) amende; (e) travaux supplémentaires; (f) isolement pour un maximum de trente jours, dans le cas d'une infraction disciplinaire grave avec ou sans restrictions liées aux visites de membres de la famille, d'amis ou d'autres personnes de l'extérieur de l'établissement.

CSC/SCG-0222 (R-2015-11)
Page 1 of 2 pages
(Stocked version - Formulaire imprimé)

Inmate offence Report and notification of Charge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 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이 결과범 혹은 결과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미수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상기의 규정은 「형집행법」과 같은 법률이 아닌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규정들이기 때문에 그 개정의 방법은 법률보다는 더욱 유연하다. 법무부장관의 발의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된 후 공포되면 바로 효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규정을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에 추가한다면 미수범 규정은 쉽게 신설할 수 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18. 3, 5의2, 9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V. 결론

교정시설은 늘 보이지 않는 긴장이 많은 곳이다. 그중에서도 수용자의 징벌은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의 입장이 늘 상충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수용자 징벌과 관련된 제도 등은 항상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을 비롯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같은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주시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 징벌과 관련된 규정은 항상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맞게 수정하면서 완벽을 추구해야 한다.

현재 「형집행법」에 규정된 징벌 사유는 그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 저자는 교정 현장에서 적지 않은 수의 규율 위반으로 발생하는 상황과 그것을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현재의 징벌 규정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본질에는 교정시설의 특수성과 결합하여 미수 규정의 불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수 규정의 신설은 결코 가벌성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수 규정의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교정 현장은 문제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수용자에게 침익적으로 작용하는 처분을 내리고 있다. 진짜 문제는 바로 그것이다. 불명확한 규정을 근거로 수용자에게 징벌을 내리는 것은 수용자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교정공무원의 업무 처리를 난해하게 하는 것일 뿐이다.

교정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제일 첫 출발은 교정시설 내 규율을 확립하여 수용자들로 하여금 교정시설의 질서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수형자 징벌과 관련된 규정의 명확한 정비임을 다시 강조하며 부디 본 논문이 앞으로의 교정행정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남철, (2021), 행정법 입문, 정독
- 김동현, (2006), '수용자 징벌제도의 적정성 확보방안',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옥기, (2007), '행형법상 징벌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공법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옥기/송문호, (2014), '수용자 징벌제도의 개선방안', 교정연구 vol.63
- 유병철, (2021),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수용자 금치제도의 개선방안 : 금치위주의 징벌집행 관행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0 No.2
- 이상천, (2010), '행정법에 있어서의 죄형법정주의-법률상의 이익개념과 명확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5 No.3
- 이재상, (2001), 형법총론(제4판), 박영사
- 이형국, (2003), 형법총론, 법문사
- 이형국/김혜경, (2019), 형법각론 2판, 법문사
- 정승환, (2011),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징벌제도의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 조성용, (20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금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168호
- 최제영, (2019), '수용자 징벌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정책연구서)

기타자료

- 미국 텍사스 주 교정청 지침, DISCIPLINARY RULES AND PROCEDURES FOR OFFENDERS
- 손정빈, (2019), 인권위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징벌, 자의적이선 안 돼" 뉴시스(NEWSIS) (검색일: 2023. 7. 11.)
- 캐나다 연방교정청 법령, CCRA(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Current to December 11, 2017, Last amended on June 17, 2016
- 호주 퀸즐랜드 교정청 법령, Corrective Services Act 2006, Current as at 1 July 2023

국문 요약

범죄와 형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과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연구: 유치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박명인
경기대학교 박사과정



윤옥경
경기대학교 교수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이 연구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은 어린 나이부터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 만들어진다는 인식하에 유치원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과 범죄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와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경기지역 유치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219명을 대상으로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적 인식, 유아 대상 범죄에 대한 인식, 유아 대상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으로 구분하여 이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학부모들의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엄벌주의적으로 나타났으며, 수형자의 교정·교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불관용, 가혹한 형벌 부과, 무력화 지향 등과 같은 엄벌주의적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유치원 학부모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아 대상 범죄와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자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과 상황적 여건으로 인해 유아인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어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유아와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교육의 방향성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으며, 본 연구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과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범죄예방교육 자료와 개발 및 실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 주제어 : 범죄, 형벌, 인식, 범죄예방교육, 유치원 학부모

I. 서론

최근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교통량 증가, 유해시설 증가, 복잡한 도시구조 등 이전에 비해 유아가 살기에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졌다. 또한,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 기능의 약화 현상과 맞벌이의 증가로 인해 유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유치원, 학원 등 외부 기관에서 보내고 있으며, 교육기관에 보내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문혜련, 2009). 유아들은 발달 특성상 호기심이 많고 신체기능 발달이 덜 되어 미숙하며, 판단능력과 조절능력이 부족한 시기기 때문에 쉽게 범죄에 노출되어 유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다양한 유형으로 급증하고 있다(도현심, 이사라·송승민, 2009; 김영심, 2012).

『2022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1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총 1,210건으로 2012년부터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0년 감소한 후 2021년에 다시 증가하여 지난 10년 동안 7.4% 증가하였고,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사례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기준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37,605건으로 나타나 전년 30,905건 대비 아동학대 사례 증가율이 약 20% 정도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3). 13세 미만의 아동 유괴범죄는 2021년 총 251건의 약취유인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55.0%에 해당하는 138건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범죄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08년 조두순 사건, 2011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청주시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 2018년 제주도 의붓아들 학대 사건 등 줄어들지 않는 유아 대상 범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유아는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사결정이 쉽지 않아 학부모나 교사가 많은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어 가정과 유치원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유아가 가지게 되는 범죄에 대한 인식형성은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부모의 생활태도와도 깊은 연관을 갖는다. 또한,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범죄에 대한 인식은 생활 속 유아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실천이나 자원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문혜련, 2009). 따라서 가정과 유치원

에서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육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부모가 유아의 학습을 보조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유아 대상 범죄와 형별,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서예석·이경실, 2008).

현재 유아 대상 범죄는 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대책』 등을 통해 범죄대처 및 예방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공식적으로 사건화되지 않은 암수 범죄가 더 많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김영심, 2012). 특별히 성범죄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알림e' 등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논란 중에 있거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유아 대상 범죄에 대한 현실적 대책보다 범죄자 처벌 가중, 범죄자 관리 등의 방법 모색 수준에 그치고 있어 유아 대상 범죄에 대한 대처 및 예방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유치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실종, 유괴, 성범죄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생활안전교육에 일환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범죄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김영심 2012). 마찬가지로 단순 안전교육과 유아 신변에 관한 연구는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종종 실시된 바 있으나 유아 대상 범죄 인식 및 교육적 요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와 형별에 대한 인식은 어린 나이부터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 만들어진다는 인식하에 유치원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범죄와 형별에 대한 인식과 범죄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와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실태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 8번에서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 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흥악성 또한 심각해져 아동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김영심, 2012).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18세 미만의 사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19세 미만의 자를 대상

으로 다양한 유형의 범죄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 재학 중인 유아 즉 영유아보육법 상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이를 말하는데, 이러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실태는 매우 한정적이고 그 범위가 적기 때문에 유아를 포함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아동학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된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 기준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37,605건으로 전년 30,905건 대비 아동학대 사례 증가율은 약 20% 정도로 나타났다. 연령별 피해아동 비율을 살펴보면, 만 3~5세는 다른 연령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었고, 만 13~15세가 6,903건(24.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10~12세(23.3%), 7~9세 5,331건(19.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발생 건수가 23,119건(82.7%)으로 가장 높았고, 대리양육자 3,047건(10.9%), 친인척 879건(3.1%)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12,796건(45.7%), 친모 9,562건(34.2%)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2,738건(8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같이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각각 613건 (2.2%), 101건(0.4%), 1,654건(5.9%)으로 파악되었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은 정서학대 10,632건(38.0%), 중복학대 9,775건(34.9%), 신체학대 4,911건(17.6%), 방임 2,044건(7.3%), 성학대 609건(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22년에 신고접수 된 재학대 사례는 총 4,475건이며, 재학대 아동 명수는 3,469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27,971건 대비 재학대 사례 비율은 16.0%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보건복지부, 2023).

마지막으로 2022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발견된 아동은 총 50명으로,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약 0.23%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는 2019년 42명(0.19%), 2020년 43명(0.19%), 2021년 40명(0.15%)으로 그 수와 아동학대 사망아동 명수 비율 또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 아동성폭력

대검찰청 『2022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총 1,210건으로 2012년부터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20년 감소한 후



2021년에 다시 증가하여 지난 10년 동안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20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2013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4년부터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1년에 다시 증가하여 지난 10년 동안 1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65.8%로 가장 많았고, 강간·간음 19.5%, 통신매체이용음란 7.2%, 카메라등이용촬영 2.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3~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강제추행(36.2%)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동 성폭력범죄에 비해 비율이 낮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13.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12:00-17:59, 58.5%)로, 이는 13~20세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밤(20:00-03:59, 43.2%)에 가장 발생한다는 점과 대비되는 것으로 보아 13세 미만의 아동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하교한 후 외부 활동을 하는 낮시간에 성폭력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의 발생 장소는 주거지가 4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노상 18.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3~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 또한 주거지가 2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숙박·유·홍업소 17.5%, 노상 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57.5%가 타인으로 가장 많았고 친족 17.3%, 이웃·지인 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는 13~20세 연령층 대상 성폭력범죄에 비해 범죄자가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이웃·지인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3) 아동유괴

대검찰청 『2022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총 251건의 약취유인범죄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55.0%에 해당하는 138건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범죄로 나타났다. 아동유괴 피해자의 39.1%가 남성아동, 60.9%가 여성아동으로 여성아동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으며, 13세 미만 아동유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시간대(12:00-17:59)로 전체 범죄의 60.9%를 차지했다. 오후 시간대(12:00-17:59)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와 동일하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범죄의 유형과 상관없이 아동들이 외부에서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유괴범죄의 발생 장소는 노상 47.1%(65건), 그 외 주거지 33.3%(46건), 기타 19.6%(27건)에서 발생하였으며, 13세 미만 아동유괴범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타인인 경우가 61.3%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친족 22.7%, 이웃·지인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한 이론

일반적으로 범죄피해두려움(fear of crime)은 범죄피해를 경험했을 때와 경험하지 않았지만 범죄피해에 두려움이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차훈진, 2014). 범죄로부터 피해를 경험하거나 경험한 적이 없고 두려움이 생긴 경우 모두 어른·아이를 막론하고 개인에게 큰 두려움으로 작용하며, 이 두려움은 심리·정서적 불안감을 유발하여 개인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에까지 이를 수 있다(박윤환·장현석, 2013; Kelling & Wilson, 1982; 구교



태, 2016). 이처럼 범죄피해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며, 이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세우기 위하여 힘쓰는 모습에도 영향을 미친다(박성훈, 2014).

범죄피해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미국의 범죄율이 급상승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범죄의 위협이 높아져 197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으며, 범죄학계와 형사사법계의 연구를 통한 신속한 성장으로 인해 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어 사용하기도 한다(차훈진, 2014). 주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 조사 질문은 “당신이 살고 있는 곳 주변에 밤에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 있는가?”와 같은 사례의 질문들을 오랫동안 사용하여 두려움에 대한 변화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질문은 주어진 조건에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범죄피해두려움을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Warr, 2000; 김광용, 2018).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한 의미나 개념은 학술적인 의견이나 논의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별에 따른 범죄피해두려움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피해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실제 범죄피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낮은데 비해, 여성들은 아주 작은 범죄피해를 경험했어도 두려움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임창호, 2018).

범죄피해두려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변을 통한 간접적 경험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영향을 받고, 대중매체를 통해 간접적인 경험이 영향이 있음을 많이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김광용, 2018). 즉 실제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경험보다 대중매체와 주변을 통해 범죄피해에 대해 접한 경우 두려움이 더 높게 나타났다(Hale, 1996; 김광용, 2018). 신문 기사를 통해 범죄 소식을 많이 접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범죄피해두려움이 높았으며, 범죄 관련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더 두려워한다고 나타났다(Dowler, 2003; 김광용, 2018). 또한, 자기 자신이 몸이 약해 범죄 상황에서 신체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다고 느낄 경우, 타인과 가족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신체적인 손상을 입었을 때 회복이 오래 걸리는 경우 범죄피해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Hale, 1996; 김광용, 2018). 이처럼 범죄 상황에서 대처가 미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 노인, 아동,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의 범죄피해두려움은 더 클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범죄피해두려움은 나이, 교육수준, 소득수준, 자녀 등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확인되는데 Sjööberg(1998)의 연구에 따르면, 갓난아기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강하게 반응해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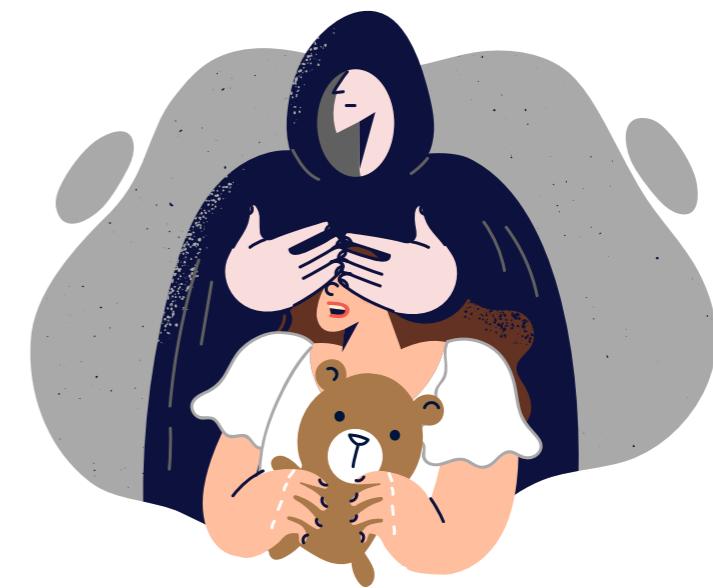
럼 최근 유아 대상 범죄가 증가하면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범죄피해두려움은 커지고 있다. Warr(2000)의 연구에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구조 내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구도와 정도, 사회적 결과를 다루고, 이러한 가족구조에서는 개인적 두려움보다 이타적 두려움이 더 높고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자녀와 아내의 범죄피해두려움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늘 여성의 문제로 논의된 부분들이 수정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부모가 느끼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두려움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도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자녀와 관련된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김지선(2004)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부모의 두려움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였는데, 부모 자신의 범죄피해두려움보다 자녀의 범죄피해두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아들보다 딸의 범죄피해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 따라 범죄피해의 유형에 따라서도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의 경우 학교폭력, 갈취 등의 유형을 두려워한다면, 딸의 경우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 성과 관련된 범죄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성별에 상관없이 모(母)가 부(父)에 비해 자녀의 범죄피해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녀의 범죄피해두려움이 매우 높아 자녀의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거나, 학원의 위치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집과 가까운 거리로 다니게 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즉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향한 이타적 두려움이 크고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유치원 범죄예방교육 현황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교화, 교육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각종 교정시설, 사회기관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범죄는 발생 전 예방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발생했을 시 대처 요령 및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은 많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자료와 프로그램 연구는 더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아는 범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성인에 비해 자기조절 능력이나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아들이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교육프로그램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학부모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들의 범죄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아 대상 범죄 관련 예방 교육자료를 적합하게 만들어야 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교육 또한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김성희, 2000; 유미숙, 2002). 유아기에 형성된 기능, 태도, 지식은 어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기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며, 범죄·안전에 대한 의식은 단기간 보다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유미숙, 2002). 따라서 유아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이 벌어지고 난 뒤 사후에 사건을 처리하고 방안을 찾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유아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범죄에 대한 지식, 올바른 대처교육, 사전예방 교육 등 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손민정, 2013). 아동복지법 제31조에서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5. 12. 29., 2021. 12. 21.>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총 5개의 각호의 내용 중 범죄와 관련된 교육은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라고 되어있다. 또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성폭력 방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이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16., 2016. 11. 22., 2021. 7. 13.>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2011년 5월 2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이원화되어있는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해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2012년부터 시행했으며, 2012년 7월 10일에는 만 3세와 만 4세도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 3~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3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유아교육과정 연령별 누리과정 총론의 내용은 각 영역별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범죄 대처 및 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신체운동·건강’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체 운동·건강’에 관련된 주 내용은 기본 운동 능력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누리과정의 내용 중 범죄 대처 및 예방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교육부 명시 연령별 누리과정 내용

대상 연령	내용 범주	내용	세부내용
만 3세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 상황을 알고 도움을 요청한다.
만 4세	안전하게 생활하기	비상시 적절히 대처하기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만 5세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출처: 교육부(2015. 2. 24). 유치원교육과정 고시

<표 1>과 같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범주 중 ‘비상시 적절히 대처하기’에서 범죄 대처 및 예방에 관련된 세부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연령별 교육내용은 비슷하지만 만 3, 4, 5 세 세부내용은 차이가 있다. 만 3세는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이고, 만 4, 5세는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상황 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라고 명시하여 직접 행동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후 제2015-61호 유치원 교육과정은 2020년 2월 29로 폐지되었고,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유아교육과정 연령별 누리과정의 내용은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며, 범죄 대처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은 위 교육과정과 같이 ‘신체운동·건강’ 영역에 포함되어 ‘안전하게 생활하기’ 영역 안에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부 2020. 3. 1. 유치원교육과정 고시).

이처럼 교육과정 내용 안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대처 및 예방교육이 관련 법령과 연령별 누리과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앞서 본 내용처럼 학대, 성폭력, 실종, 유괴에 대해 일부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교육조차도 유치원 재량에 맞추어 실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체·정신적 발달이 덜 되어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범죄에 대한 개념적인 확립이 어렵다는 특성을 가진 유아들에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김성희, 2000; 유미숙, 2002).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보면 범죄와 관련된 개념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처음으로 나타나 유아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데에 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연령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전제철, 2016).

범죄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범죄 발생 상황이나 예방 문제에서도 보호의 한계는 있기 마련이므로 유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문제 발생 시 대처능력이 요구되므로 유아를 대상으로 일회적 교육보다는 반복적 교육으로 범죄 위험성 자체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내면화되어 일상생활에서 대처 행동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곽은복, 2001).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과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경기지역 유치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소규모의 학부모들이 같은 특성을 가진 주위 학부모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인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오프라인 학부모

114명, 온라인 학부모 카페(맘 카페) 회원 학부모 105명 총 21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1개월간 실시하였고, 수집된 219개의 자료 모두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조사도구 및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고안된 설문지는 학부모와 자녀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등과 같은 일반적 사항 8문항, 범죄정보 획득 매체, 범죄문제와 처벌, 수형자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인식 8문항, 유아 대상 범죄에 대한 인식 3문항, 유아 대상 범죄예방교육 필요성 5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회수된 설문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카이제곱검정(χ^2)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응답자 자녀의 성별은 여자가 65.3%로 남자보다 더 많았고, 연령은 만 5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만 4세, 만 3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은 자녀 여자가 85.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은 30대가 85.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86.3%로 가장 높았으며, 학력은 대졸이 76.3%로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업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월 소득수준은 월 300~500만원 이상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n)	비율(%)	합계
응답자 자녀 성별	남	76	65.3	219
	여	143	34.7	
응답자 자녀 연령	만 3세	70	32.0	219
	만 4세	55	25.1	
	만 5세	94	42.9	
성별	남	732	14.6	219
	여	187	85.4	
연령	20대	10	4.6	219
	30대	124	56.6	
	40대 이상	85	38.8	

변수	구분	빈도(n)	비율(%)	합계
주거형태	아파트	189	86.3	219
	단독주택	15	6.8	
	연립주택	9	4.1	
	기타	6	2.7	
학력	고졸	23	10.5	219
	대졸	167	76.3	
	대학원 이상	29	13.2	
직업	전문직	51	23.3	219
	자영업	14	6.4	
	회사원	60	27.4	
	공무원	12	5.5	
	무직	44	20.1	
	기타	38	17.4	
	월 100만원 미만	1	0.5	
월 소득수준	월 100~300만원 미만	29	13.2	219
	월 300~500만원 미만	91	41.6	
	월 500만원 이상	98	44.7	

2.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1) 범죄에 대한 정보 획득 매체

학부모들이 범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매체는 <표 3>과 같다. 먼저 학부모들은 범죄 사건에 대한 소식을 얻는 매체로 인터넷 57.1%, TV·라디오가 33.8%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0.9%가 인터넷이나 TV·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범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친구·이웃 등으로부터 5.9%, 종이로 인쇄된 신문 1.8%, 기타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범죄에 대한 정보 획득 매체(n=219)

	빈도(n)	비율(%)
가족, 친구, 이웃 등	13	5.9
TV, 라디오	74	33.8
종이로 인쇄된 신문	4	1.8
인터넷	125	57.1
기타	3	1.4

2) 범죄 발생 추세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범죄 발생 추세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학부모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자(父)의 경우 보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큰 차이는 없던 것에 비해 여자(母)의 경우는 증가한 편('증가한 편'과 '크게 증가'를 합친 비율)이 83.9%에 달했다. χ^2 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 범죄 발생 추세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더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표 4>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 추세에 대한 인식 차이

	남자(부)	여자(모)	계
크게 감소	0(0.0)	2(1.1)	2(0.9)
감소한 편	3(9.4)	3(1.6)	6(2.7)
보통	14(43.8)	25(13.4)	39(17.8)
증가한 편	10(31.3)	101(54.0)	111(50.7)
크게 증가	5(15.6)	56(29.9)	61(27.9)

$\chi^2=25.332(df=4), p<.05$

3)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에 대한 인식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학부모 연령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기본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강간·성폭력과 살인을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20대 학부모들은 강간·성폭력과 살인, 30대 학부모들은 살인, 40대 이상 학부모들은 강간·성폭력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살인을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 검정 결과 연령에 따른 우리나라 범죄 발생 추세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령에 따른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 인식 차이

	20대	30대	40대 이상	계
살인	4(40.0)	57(46.0)	25(29.4)	86(39.3)
강도	1(10.0)	0(0.0)	0(0.0)	1(0.5)
강간·성폭력	4(40.0)	49(39.5)	35(41.2)	88(40.2)

단위: 명(%)

폭행·상해	0(0.0)	2(1.6)	2(2.4)	4(1.8)
유괴·인신매매	0(0.0)	11(8.9)	21(24.7)	32(14.6)
사기	1(10.0)	0(0.0)	1(1.2)	2(0.9)
횡령·배임	0(0.0)	1(0.8)	0(0.0)	1(0.5)
기타	0(0.0)	4(3.2)	1(1.2)	5(2.3)

$\chi^2=47.155(df=14), p<.05$

학부모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는 <표 6>과 같이 남자(父)는 살인을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자(母)는 강간·성폭력이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 검정 결과 성별에 따른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성별에 따른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 인식 차이

	남	여	계
살인	12(37.5)	74(39.6)	86(39.3)
강도	0(0.0)	1(0.5)	1(0.5)
강간·성폭력	8(25.0)	80(42.8)	88(40.2)
폭행·상해	2(6.3)	2(1.1)	4(1.8)
유괴·인신매매	10(31.3)	22(11.8)	32(14.6)
사기	0(0.0)	2(1.1)	2(0.9)
횡령·배임	0(0.0)	1(0.5)	1(0.5)
기타	0(0.0)	5(2.7)	5(2.3)

$\chi^2=14.835(df=7), p<.05$

4) 범죄자 처벌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범죄자 처벌에 대한 인식은 <표 7>과 같다. 우리나라 처벌 수위는 약하다가 90.8%('매우 약하다'와 '약한 편이다'를 합친 비율)로 나타나 대부분의 유치원 학부모들은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범죄자 처벌에 대한 인식(n=219)

	빈도(n)	비율(%)
매우 약하다	115	52.5
약한 편이다	85	38.3
보통이다	18	8.2
엄격한 편이다	1	0.5

범죄유형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에 대한 인식은 〈표 8〉과 같다. 횡령·배임, 청소년비행에 대한 응답은 없었으며, 살인 44.7%, 강간·성폭력 39.7%, 유괴·인신매매 11%, 폭행·상해와 사기 각 1.4%, 강도, 부정부패·뇌물, 기타범죄가 각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죄질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범죄에 대해 학부모들은 성폭력·강간 39.3%, 살인 40.2%로 각각 응답하였는데,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살인 44.7%, 강간·성폭력 39.7%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 살인과 강간·성폭력 범죄유형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유형(n=219)

	빈도(n)	비율(%)
살인	97	44.7
강도	1	0.5
강간/성폭력	87	39.7
폭행상해	3	1.4
유괴/인신매매	25	11
절도/소매치기	1	0.5
사기	3	1.4
부정부패뇌물	1	0.5
기타	1	0.5

5) 수형자에 대한 인식

교정시설에서 형을 사는 수형자들은 수형자 개별처우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수형자 개별처우 프로그램이란 수형자가 수용된 이유를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받는 것을 말한다.

〈표 9〉는 수형자 개별처우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5가지 항목 중 수형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학부모들이 인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재범방지 를 위한 교정·치료가 7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인성·학업) 8.2%, 사회 적응훈련 6.4%,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5%, 기타 3.2%, 직업훈련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수형자에게 필요한 요소(n=219)

	빈도(n)	비율(%)
교육(인성, 학업)	18	8.2
교정, 치료(재범방지)	166	75.8
사회적응훈련	14	6.4
가족관계회복	11	5
직업훈련	3	1.4
기타	7	3.2

수형자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표 10〉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없다 14.2%, 없는 편이다 53.4%, 어느 정도 있다 28.3%, 많은 편이다 2.3%, 매우 많다 1.8%의 순으로 유치원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수형자의 개선(교정·교화)의 가능성은 없는 편 (67.6%, ‘전혀 없다’와 ‘없는 편이다’를 합친 비율)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수형자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인식(n=219)

	빈도(n)	비율(%)
전혀 없다	29	14.2
없는 편이다	119	53.4
어느정도 있다	62	28.3
많은 편이다	5	2.3
매우 많다	4	1.8

출소자들의 재범을 방지 방안에 대한 인식은 〈표 11〉과 같다.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재범방지 방안은 보호관찰제도 확대 및 세밀화 60.3%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인 다양한 지원 확대 13.7%, 교정시설 프로그램 교육 강화 11.4%, 가족들의 책임 확대와 사회의 인식변화 교육 각 5.5%, 기타 3.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출소자들의 재범방지 방안(n=219)

	빈도(n)	비율(%)
가족의 책임확대	12	5.5
교정시설 내 교육 강화	25	11.4
사회적 지원 확대	30	13.7
보호관찰제도 확대 및 세밀화	132	60.3
사회 인식변화 교육	12	5.5
기타	8	3.7

〈표 13〉 자녀의 성별에 따른 자녀를 조심시키는 방법에 대한 차이

	남	여	계	단위: 명(%)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해준다	39(27.3)	37(48.7)	76(34.7)	
범죄대처 도구를 가지고 다니게 한다	9(6.3)	4(5.3)	13(5.9)	
외출 시 보호자가 꼭 동반한다	61(42.7)	18(23.7)	79(36.1)	
외출 시 아이와 자주 통화 한다	9(6.3)	10(13.2)	19(8.7)	
외출 시 장소와 연락처를 알아놓는다	25(17.5)	7(9.2)	32(14.6)	

$\chi^2 = 16.616(\text{df}=4), \text{p}<.05$

3. 유아 대상 범죄에 대한 인식

1) 유아 대상 범죄에 대한 인식

죄질이 나쁜 유아 대상 범죄유형에 대한 인식은 〈표 12〉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성범죄가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살인 22.4%, 아동학대 16.4%, 실종(유괴·인신매매) 9.6%, 폭력 5.5%, 기타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범죄유형(n=219)

	빈도(n)	비율(%)
살인	49	22.4
실종(유괴·인신매매)	21	9.6
성범죄	100	45.7
아동학대	36	16.4
폭력	12	5.5
기타	1	0.5

2) 자녀의 범죄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자녀를 조심시키는 방법에 대한 차이를 학부모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자녀의 성별과 상관없이 외출 시 아이와 꼭 동반한다와 범죄 피해 위험성에 대해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해주고 있었으며, 자녀의 성별이 남자인 경우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해주며 범죄 피해로부터 조심시켰고, 응답자 자녀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 외출 시 보호자가 꼭 동반해 아이 혼자서 외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 검정 결과 성별에 따라 자녀를 조심시키는 방법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가 자녀를 범죄 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교육 시 어려웠던 점에 대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방법 부족 42.9%, 수시로 변동되는 상황적 여건 36.1%, 유아의 부주의한 행동 14.6%, 교육을 위한 시간 부족 4.1%, 기타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부모들은 자녀를 범죄 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외출할 때 꼭 동반하고 기회가 될 때 이야기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범죄 대처 및 예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방법을 모르고, 수시로 변동되는 상황적 여건으로 인해 교육의 어려움이 가장 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자녀 교육 시 어려웠던 점(n=219)

	빈도(n)	비율(%)
유아의 부주의한 행동(성격)	32	14.6
교육을 위한 시간 부족	9	4.1
교육에 대한 지식 및 방법 부족	94	42.9
상황적 여건	79	36.1
기타	5	2.3

4. 유아 대상 범죄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1) 범죄예방교육의 필요성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표 15〉와 같다. 학부모들은 범죄예방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74.9%, 필요하다 19.6%, 보통이다 5%, 필요하지 않다 0.5%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4.5%가 범죄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유아 대상 범죄예방교육의 필요성(n=219)

	빈도(n)	비율(%)
필요하지 않다	1	0.5
보통이다	11	5.0
필요하다	43	19.6
매우 필요하다	164	74.9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교육 방법에 대한 인식은 〈표 16〉과 같다. 학부모들은 연령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육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별도 시간을 정해 주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35.2%, 국가의 지침서를 활용해 교육해야 한다 3.7%, 아직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범죄예방교육 방법(n=219)

	빈도(n)	비율(%)
교육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실시	133	60.7
별도 시간을 정해 주기적으로 실시	77	35.2
국가의 지침서 활용	8	3.7
아직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1	0.5

2) 유아 대상 범죄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누리과정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를 자녀의 연령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는 〈표 17〉과 같다. 만 3세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누리과정의 내용을 알고 있는 학부모보다 모르고 있는 학부모들이 더 많았고, 만 4세와 만 5세의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누리과정 내용을 모르고 있는 학부모보다 알고 있는 학부모들이 더 많았다.

이는 만 3세에 비해 유치원에 더 오래 다닌 만 5세의 학부모들이 유치원 교육과 정보에 대해 더 익숙해져 있음을 시사한다. χ^2 검정 결과 연령에 따라 누리과정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자녀의 연령에 따른 누리과정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

	만 3세	만 4세	만 5세	계
알고 있다	31(44.3)	35(63.6)	60(63.8)	126(57.5)
모르고 있다	39(55.7)	20(36.4)	34(36.2)	93(42.5)

$$\chi^2 = 7.392(df=2), p<.05$$

누리과정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를 학부모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는 〈표 18〉과 같다. 남자(父)는 누리과정의 내용을 알고 있는 학부모보다 모르고 있는 학부모가 더 많았고, 여자(母)의 경우 누리과정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학부모보다 알고 있는 학부모가 더 많게 나타났다. χ^2 검정 결과 성별에 따라 누리과정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응답자 성별에 따른 누리과정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

	남자	여자	계
알고 있다	11(34.4)	115(61.5)	126(57.5)
모르고 있다	21(65.6)	72(38.5)	93(42.5)

$$\chi^2 = 8.227(df=1), p<.05$$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교육 참여 여부에 대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경험이 없다 77.6%, 경험이 있다 22.4%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부모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대처 및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학부모 범죄예방교육 참여 여부(n=219)

	빈도(n)	비율(%)
경험이 있다	49	22.4
경험이 없다	170	77.6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표 20>과 같다. 필요하다 49.8%, 매우 필요하다 37.9%, 보통이다 11.9%, 필요하지 않다 0.5%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표 20>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교육 필요성(n=219)

	빈도(n)	비율(%)
필요하지 않다	1	0.5
보통이다	26	11.9
필요하다	108	49.8
매우 필요하다	84	37.9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은 어린 나이부터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부모로부터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 만들어진다는 인식하에 유치원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과 범죄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와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로,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적 인식, 유아 대상 범죄에 대한 인식, 유아 대상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학부모들은 인터넷이나 TV·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범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범죄 발생 추세에 대해 남자(父)보다 여자(母)가 더 증가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에 대한 인식 차이는 학부모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본적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강간·성폭력과 살인을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범죄자 처벌 수위는 대부분 약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폭력·강간, 살인범죄에 대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형자에게 필요한 요소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치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형자의 개선 가능성은 없는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성폭력, 아동학대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유아대상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불관용, 가혹한 형벌 부과, 범죄자의 무력화 지향 등 엄벌주의적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유치원 학부모들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유아 대상 범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유아 대상 범죄 중 성범죄를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를 조심시키는 방법에 대한 차이를 학부모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먼저 자녀의 성별과 상관없이 외출 시 아이와 꼭 동반하고 범죄피해 위험성에 대해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해주고 있었으며, 자녀의 성별이 남자인 경우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해주며 범죄 피해로부터 조심시켰고, 응답자 자녀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 외출 시 보호자가 꼭 동반해 아이 혼자서 외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부모들은 자녀의 범죄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다양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교육 실행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범죄 대처 및 예방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방법이 부족하고, 수시로 변동되는 상황적 여건으로 인해 교육의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 대상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학부모들은 범죄예방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범죄예방교육 시 연령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육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누리과정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를 자녀의 연령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만 3세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누리과정의 내용을 알고 있는 학부모보다 모르고 있는 학부모들이 더 많았고, 만 4세와 만 5세의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누리과정 내용을 모르고 있는 학부모보다 알고 있는 학부모들이 더 많았다.

이는 만 3세에 비해 유치원에 더 오래 다닌 만 5세의 학부모들이 유치원 교육과 정보를 더 많이 접해 알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누리과정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를 학부모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본 결과 남자(父)에 비해 여자(母)가 더 누리과정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학부모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대처 및 예방교육

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교육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 요약을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후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육 자료 개발과 함께 교육을 실시할 때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범죄 인식, 법 감정과 같은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반영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학부모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인식 조사를 통한 비교 연구를 통해 양질의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를 대상으로 범죄 대처 및 예방교육 시 구체적인 지식과 방법 부족, 상황적 여건으로 인해 교육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 요즘 관련 교육을 부모가 온전히 책임지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누리과정 속 차별화된 범죄 관련 교과목 확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유아의 실제적 경험을 통한 국가와 지역사회, 유치원과 가정이 연계된 교육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단순 유아 대상 범죄예방교육 만으로는 유아에게 범죄예방에 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미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춰 학부모 교육에 대한 교수학습매체와 다양한 교육자료 지원 및 개발 등에 관한 폭넓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과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인디언들의 속담처럼 유아들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아들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유아들이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범죄 대처 및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범죄와 형별에 대한 인식과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유치원 학부모들의 인식을 연구한 아주 기초 단계의 연구로, 추후 발전·보완된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경기지역 유치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만을 연구대상으로 조사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전국의 유치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의 결과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인 학부모를 오프라인 114명, 온라인 105명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두 집단 간 이질성이 있을 수 있다는 한계

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과 범죄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알아봄으로써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적 인식, 유아 대상 범죄 대처 및 예방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방법, 교육적 요구 등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토대로 범죄 대처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경기도교육청, (2019),『경기유아교육 정책 추진 기본계획』, 경기 : 경기도교육청, p. 250.
 곽은복, (2001),『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구성』, 서울 : 창지사.
 교육부, (2015),『3~5세 연령별 누리과정』완성·고시 (2015-61호)
 _____, (2019),『3~5세 연령별 누리과정』완성·고시 (2019-189호)
 _____, (2019),『개정누리과정 해설서』, 서울 : 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 (2013),『부모와 함께하는 유아재난대비·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구교태, (2016),“범죄피해 두려움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 직간접적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9(1), pp. 113-126.
 김광용, (2018),“한국인의 위험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성희, (2000),『유아안전교육』, 서울 : 창지사.
 김영심, (2012),“낯선 사람의 범죄유인 행동에 대한 유아의 인식”, 대한가정학회지, 50(1), pp. 41-50.
 김지선, (2004),“자녀의 범죄피해에 대한 부모의 두려움”, 피해자학연구, 12(1), pp. 25-57.
 대검찰청, (2022),『범죄분석』, 서울 : 대검찰청.
 도현심/이사라/송승민, (2009),“유해환경”, 아동학회지, 13(6), pp. 123-137.
 문혜련, (2009),“만4~5세 유치원생 어머니들의 유아사회교육에 대한 인식 :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이용 하여”, 한국생활과학회지, 18(5), pp. 1009-1020.
 박성훈, (2014),“범죄두려움이 CCTV의 선호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1), pp. 58-90.
 박윤환/장현석, (2013),“지역 수준 범죄피해 두려움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공식범죄통계, 무질서, 집 합적 효율성,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5(6), pp. 59-88.
 보건복지부, (2023),『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서울 : 보건복지부.
 서예석/이경실, (2008),“유아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유아지원연구, 3(2), pp. 145-175.
 손민정, (2013),“유아의 신변안전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미숙, (2002),“유아 안전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조사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창호, (2018),“시민의 범죄 두려움 인식에의 영향요인”, 한국범죄심리연구, 14(4), pp. 151-166.
 전체절, (2016),“범죄의 개념에 대한 교육과정 연구”, 법교육연구, 11(3), pp. 114-115.
 차훈진, (2014),“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이론적 고찰”, 한국범죄심리연구, 10(2), pp. 241-257.

■ 외국문헌

- Dowler, K. (2003). “Media consumption and public attitudes toward crimeand justice: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crime, punitive attitudes, and perceived police effectivenes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and Popular Culture, 10(2): 09-126.
 Hale, C. (1996). “Fear of crime: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4(2): 79-150.
 Kelling, G. & Wilson, J. (1982). “Broken windows: The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 Atlantic Monthly, 249 (3): 29-38.

Sjöoberg, L. (1998). “Worry and risk perception”. Risk analysis, 18(1): 5-94.

Warr, M. (2000). “Fear of crime in United States : Avenues for research & policy”. in Measurement & analysis of crime & justice, 4,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39.

■ 법령자료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1. 8.] [대통령령 제32985호, 2022. 11. 8., 일부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54호, 2013. 6. 13., 일부개정]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 기타자료

e-나라지표 www.index.go.kr



범죄자 아니면서 교도소에 생활하는 유일한 사람 “교정공무원”



송남옥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교감

“남편이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가끔 언론 보도에서는 ‘간수’라는 표현을 접할 때가 있어 유감스럽다. 이 간수라는 용어는 일본 교도관들의 계급 체계 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법을 어긴 사람들과 최일선에서 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는 교도관의 사기를 꺾지 않게끔 호칭이라도 바르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부산일보, 2009. 1. 12. 독자마당)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교정공무원은 교정기관(교도소, 구치소)등에 재직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정·교화를 담당하는 전문직(법제처, 2022)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관리, 감독, 교정, 교화로 정리된 교정공무원의 역할은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에서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사회로 나갈 때는 입소 전에 가진 범죄적 성향에 대한 개선을 통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가지 단어로 정리된 이 역할이라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다.

일단 수용자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 사회로부터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규칙 준수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생활을 시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 과정에서 수용자는 교정공무원에서 언어·신체적인 폭력, 고소·고발, 정보공개청구, 진정 등을 행사한다. 물론 수용자가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정보공개, 진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용자의 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건수는 2020년 4,124건, 2021년 4,522건 등 평균 4천 건대이고, 권고 결정 비율은 1%미만인 것으로 볼 때 수용자의 정당한 권리라기보다는 직원을 괴롭히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매일신문, 2023.10.29.). 그 결과 교정공무원이란 직업 앞에 극한직업, 자살위험군, 정신건강 빨간불이란 단어가 붙게 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2~2021년까지 사망한 현직 교정공무원은 121명이며, 이 중 38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사망자 10명 중 3명이 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2022년 실시한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정공무원 4명 중 1명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공격성과 우울 위험군의 비율은 각각 3.9%로 2년 전보다 공격성은 0.7%p, 우울은 1%p 상승했다. 불안과 비인간화 위험군은 각각 4.2%, 2.5%로 2년전보다 0.8%p, 0.3%p 높아졌다고 보고되었다(법무부, 2022). 이는 교정공무원들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소진된 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진된 교정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인 수용자 교정·교화에 집중할 수 없게 되면서 더 많은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수용자는 직원에게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고 고소·고발이라는 악수를 두어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든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교정시설은 수용자-교정공무원이 대치하는 적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직원들이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 수준은 증가한다. 그로 인해 일부 교정공무원은 휴직, 이직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떠나게 되고, 교정시설은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된다(박정수, 진종순, 2016).

교정공무원의 소진과 이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교정 조직과 수용자, 교정공무원 모두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함께 고민해서 만들어갈 것을 제시해 본다.

첫 번째로 소진된 교정공무원의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소진은 직무에서의 무기력과 불만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친밀한 대인관계, 가족과의 갈등도 유발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더 고립되고 우울감, 무력감 등을 경험하고 심각한 경

우 자살·자해 등의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서는 심리치료과를 신설하여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마음나래’ 프로그램을 통해 외부전문가와의 개인상담, 직원 정신건강 힐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지원 예산은 작년 8억 4천 7백만원에서 올해 15억 3천 8백만원으로 증가했다(KBS뉴스, 2022.9.4.). 앞으로 좀 더 많은 직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교정공무원의 유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능감은 소진의 감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소연, 박남숙, 2014; 조영문, 2014). 교정공무원은 입직 당시 법무연수원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직무를 배우고 있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경험하며 무능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필기·체력검증 등의 어려운 관문을 거쳐 입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선배 직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과 소집단 토론 문화를 제도화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면, 선배들의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자신감과 유능감을 가질 수 있다(박정수, 진종순, 2016).

마지막으로 교정공무원의 직업정체성 확립을 통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체성이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를 말하며(국립국어원, 2017), 인간은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 어떤 지위를 획득했는지를 알아가게 된다. 직업은 현대사회에서 정체성 형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직업정체성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배현미, 2022; 유은선, 이종연, 2017). 직업정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은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직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견뎌내고, 자신의 일이 주는 의미를 찾고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김요섭, 여영훈, 2018; 나홍규, 라채일, 우여름, 2017). 교대근무, 교정시설이라는 근무지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범죄자의 교정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로 심각한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업정체성을 잘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업인 것이다.

지금은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시간

사회는 교정공무원인 우리에게 범죄자가 교정시설에서 나올 때는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새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바램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교정공무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정공무원의 직업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진행중)를 위한 심층면담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든지 간에 교정공무원은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한테 접근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C교도소 CRPT팀장)

내는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지만, 나에게는 친구들도 있었고 선생님들도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K교도소 심리치료팀 직원)

그렇다면 사회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수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다시 돌아온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출소자에게 들어보았다.

직원과 재소자라는 걸 떠나서 되게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이 잘 따르고, 마음 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니까요 성함이 기억이 나니까.(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연구, 2022)

되게 성심성의껏 교화를 도와주시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여러 명이 진행을 했는데 그런 걸 다 일대일로 따로 고민상담도 해주시고 교육을 해주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았어요...(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연구, 2022)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에게 직업훈련, 학과교육, 종교집회,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2020년 25.2%, 2021년 24.6%, 2022년 23.8%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의 역할에 무엇인지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간수’, ‘담배장사’, ‘범죄자의 조력자’가 아닌 자랑스러운 ‘3대 제복공무원(경찰관, 소방관, 교도관)’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더 이상 ‘반수인(半囚人)’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를 위한 마중물이 된 것이다. 담장 안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에서 범죄자의 외롭고 힘든 변화의 시간을 함께 한 사람은 교정공무원이다. 우리가 했던 그 일들은 담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불꽃은 아무리 감추려해도 담장의 틈 사이로 보이기 마련이다. 우리의 노력을 담장 밖의 사람들도 알게 된 지금이야 말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간인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요섭·여영훈. (2018). 노인요양원 종사자의 업무환경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직업정체성의 조절효과, 「지역과 세계」, 42(3), 39-60.
- 나홍규·라채일·우여름. (2017). 근무환경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업정체성의 조절효과: 커피전문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Tourism Research」, 42(1), 43-64.
- 박정수·진종순. (2016). 교정공무원의 직무탈진감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13(3), 183-200.
- 배현미. (2022). 예비 특수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질적 탐구, 「인문사회21」, 13(2), 809-822.
- 유은선·이종연. (2017).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직업정체성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진로교육연구」, 30(2), 127-156.
- 윤정숙·김민영·이태현. (2020).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연구, 「연구총소」,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 이소연·박남숙. (2014). 상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의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자와 대학상담자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35(1), 73-92.
- 조영문. (2014).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간호사 소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2(6), 491-500.

매일신문 보고자료, 2023년 10월 29일.

부산일보 보도자료, 2009년 01월 12일.

법무부(2022).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KBS뉴스 보도자료, 2022년 09월 04일.

의료처우 관련 판례 검토



마성용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 교감

목차

- I. 들어가며
- II. 최근 의료처우 관련 판결
- III. 의료처우에 관한 국가배상
 소송의 요건
- IV. 의료처우에 관한 비용 부담의
 문제
- V. 맷음말

I. 들어가며

교정시설의 의료처우에 관하여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들이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의료처우와 관련하여 ‘제4장 위생과 의료’라는 별도의 장을 두어 이를 규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5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장 위생과 의료

제30조(위생 · 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청결유지) 소장은 수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설비와 기구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청결의무) ①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 · 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운동 및 목욕) ①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 유지에 필요한 운동 및 목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동시간 · 목욕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건강검진)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 · 격리수용 · 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부상자 등 치료) ①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치료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송된 사람은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④ 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자비치료)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진료환경 등) ①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부의사는 수용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할 의료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①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관찰·조언 또는 설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형집행법 제30조는 교정시설의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는 제1항 및 제5항에서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고,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제38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외부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는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교정시설의 자체적인 설비 또는 외부의료시설을 통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국가가 수용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용자에게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치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단 국가의 비용으로 외부진료를 받게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은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외부진료 시에는 수용자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지, 수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지 않은 외부진료의 경우에는 국가에게 그 진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적절한 치료’의 범위와 내용은 수용자의 질병상태와 그 치료비용, 수용기간, 국가의 예산규모,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의료처우에 관한 국가배상소송의 요건에 대한 판례와 더불어 비용 부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며 소송에서 느낀 약간의 당부를 남겨보고자 한다.

II. 최근 의료처우 관련 판결

최근 유족들이 ‘망인은 수감중에 흉선암이 발병하였음에도 수용자인 망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교도소 및 ○○교도소 의무관들은 망인의 흉선암을 진단하지 못하고 망인이 지속적인 흉통을 호소하며 외부진료 및 정밀검사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은 조기에 증상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

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게 되어 결국 사망하였다'고 주장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가합70174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가합70174 판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1) 망 ○○(1956. 3. 10.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교도소,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원고 ○○○, ○○○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 2) 선정자 ○○○은 망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당시 ○○교도소의 의무관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선정자 ○○○는 망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당시 ○○교도소의 의무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망인의 수용 경위

- 1) 망인은 2013. 10. 8. 통화위조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2013. 10. 16.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2014. 5. 9. ○○구치소, 2014. 10. 27. ○○교도소, 2015. 3. 9. ○○구치소, 2015. 6. 2. ○○교도소로 각 이감되었다.
- 2) 2015. 7. 23. 망인에 대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어 망인은 2015. 7. 30. ○○교도소에 기결 입소하였고, 이후 2015. 10. 2. ○○교도소, 2015. 12. 23. ○○교도소, 2016. 12. 28. ○○교도소, 2017. 12. 27. ○○교도소로 각 이감되었다.

다. 입소 이후 망인의 건강 상태

- 1) 망인은 2013. 10. 16.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혈압이 158/100mmHg, 160/11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고혈압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 2) 망인은 수감기간 중 매년 1회 외부기관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검진 결과 및 소견은 아래와 같았다.
- 3) 2016년 1차 건강검진 결과와 관련하여 서울구로성심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2016. 6. 24. 원고의 흉부촬영결과를 다시 판독하였고, '폐 우하엽에 스폰지상의 음영증가: 폐기종 및 만성기관지염 내지 모세기관지염의증' 진단을 하였다.
- 4) 2017년 건강검진 당시 망인의 흉부방사선촬영 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었다.

라. ○○교도소 및 ○○교도소 수감 당시 망인에 대한 의료조치 경과

- 1) 망인은 ○○교도소 수감 당시인 2017. 2. 13. 오목가슴 통증(혈압 190/110mmHg)으로, 2017. 9. 24. 입안에 피가 고이는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외에도 피부질환, 두통, 몸살, 감기, 근육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 2) 망인은 ○○교도소 수감 당시인 2018. 3. 6. 오른쪽 가슴 부위에 통증이 있고 기침할 때마다

당긴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진통소염제인 알리코이부프로펜정, 근이완제인 콘락스정, 위장 약인 알리코시메티딘정을 처방받고 2018. 3. 29.까지 정기적으로 같은 약을 처방받다가, 2018. 3. 30. 호흡에는 이상이 없으나 가슴 통증이 여전함을 호소하여 같은 날 진통제인 폰틸캡슐을 추가로 처방받아 2018. 4. 30.까지 같은 약을 정기적으로 처방받았고, 2018. 5. 4.부터 가석방 시 까지는 폰틸캡슐, 알리코시메티딘정을 처방받았다.

마. 망인의 가석방 이후 치료 경과

- 1) 망인은 2018. 5. 21. 가석방되었고, 2018. 5. 28.경 ○○시 소재 ○○내과에 흉통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는데, 위 ○○내과에서 가슴 CT촬영을 한 결과 전종격동 종괴(Anterior mediastinal mass) 및 우폐 결절(Rt. lung nodule)이 확인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 2) 망인은 2018. 5. 29. ○○병원에 입원하여 2018. 5. 30. 비디오흉강경(VATS)을 통한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흉선암 4기로 주변 폐와 늑막에 전이가 되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항암화학요법을 통한 치료를 받다가, 2023. 3. 12. 사망하였다.

바. 의학적 배경

- 1) 흉선암은 가슴 부위에 있는 기관인 흉선에 악성 종양이 발생한 질환으로,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발생한 흉선암은 총 486건이며, 이는 전체 암 발생건수 214,701건 대비 약 0.2%에 해당한다.
- 2) 흉선암을 일으키는 원인과 예방법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흉선암에 대해 권고되는 조기 검진방법은 없고, 아무런 증상이 없이 우연히 X-ray 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상 X-ray 검사에서 의심되는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 CT촬영 및 조직검사를 통하여 진단한다. 증상이 있는 경우 흉선에 발생한 종양이 폐와 심장을 누르거나 영향을 미쳐 호흡 곤란, 기침을 유발하거나 가슴 통증과 삼키기 곤란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고, 흉선이 본래 담당하는 면역 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 중증 근무력증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 가. 망인은 수감 중에 흉선암이 발병하였음에도 수용자인 망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교도소 및 ○○교도소 의무관들은 망인의 흉선암을 진단하지 못하고 망인이 지속적인 흉통을 호소하며 외부진료 및 정밀검사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은 조기에 증상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치게 되어 결국 사망하였다.

- 나.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적극적 손해로서 망인이 지출한 치료비 22,498,536 원, 소극적 손해로서 일실수익 123,329,262원(= 망인이 가석방된 2018. 5. 21.부터 사망한 2023. 3. 12.까지 도시일용노임 109,819원으로 산정한 일실수익)과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위자료로 망인에게 70,000,000원, 원고 박철홍, 박혜원에게

각 15,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 ○○○, ○○○이 망인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 ○○○, ○○○에게 각 122,913,899원 = (적극적 손해 22,498,536원 + 소극적 손해 123,329,262원 + 망인 위자료 70,000,000원) × ½ + 본인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 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2002. 8. 23. 선고 2000다41776 판결 등 참조),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시설로부터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되어 있으므로, 그 시설의 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바, 그 안전확보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시설의 물적·인적 상황, 시간적·장소적 상황 등에 따라 일의 적이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75768 판결 참조).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할 수 있다', 제38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며,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교도관직무규칙 제85조 제1항 제7호는 '환자를 외부의료시설에 이송할 필요가 있거나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하여금 직접치료나 보조치료를 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자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선정자 ○○○, ○○○가 의사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망인에 대하여 흉선암을 진단하거나 최소한 중대한 질병의 발생을 의심하였어야 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교도관직무규칙에 따라 망인의 외부검진 및 외부의료시설 이송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선정자 ○○○,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감정보완촉탁 결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정자 ○○○, ○○○가 교도소의 의무관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망인이 지속적으로 외부진료 및 혈액검사를 요구하였으나 의무관들이 이를 묵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흉선암은 그 발병 비율이 높지 않은 희귀한 암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별다른 증상을 동반하지 않고, 흉통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나 흉통은 흉선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가 호소하는 흉통 증세만을 근거로 곧바로 흉선암 내지 중대한 질병 발생을 의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흉선암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흉부방사선촬영 등으로 우연히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고에 대한 2017. 6. 7. 정기검진 당시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는 정상으로 판독되었고, 이와 같은 판독이 오진이라는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가사 이와 같은 판독이 오진이라 하더라도 이는 외부기관의 건강검진 과정에서 수행된 것이므로 피고 측의 과실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3) 원고들은 2016.경 망인의 흉부 사진에서 우폐문 중대 등 특이 소견이 있었고, 2017. 2.경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측정된 점에 비추어볼 때, 2017. 2. 이전부터 중대한 병증의 발생을 추정할 수 있었고, 적어도 고혈압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외부기관 흉부 검사가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진료기록을 감정한 서울의료원 소속 감정의(이하 '감정의'라고 한다)에 따르면 2016.경 흉부사진상 우폐문 중대 및 스폰지상 음영 증대는 그 자체로 중대한 병증 발생을 추정할 수 있는 급격한 건강악화 소견은 아니고, 2017. 1.부터 3.까지 고혈압이 지속되었으나 이후에는 하강하였으므로 중대한 병증 발생을 추정할 수 있는 급격한 건강 악화 소견은 없었으며, 고혈압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흉부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다.

4) 망인은 ○○교도소 수감 기간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각종 증상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감정의에 따르면 망인이 호소한 위 각종 증상들은 특정한 중증 질환의 특이적 증상이 아니고, 가벼운 몸살, 감기, 염좌 등의 증상으로서 반복적·만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이며, 처방된 진통제의 종류 또한 진통효과의 정도가 보통인 일반적 진통제인데다가 처방이 지속되지 않았고, 달리 망인이 지속적이고 심한 흉통을 호소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각종 증상과 기존의 고혈압만으로는 망인에게 중대한 건강상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거나, 이를 의심해보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5) 망인은 ○○교도소 수감 중이던 2018. 3. 6.과 2018. 3. 30. 흉통을 호소한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흉통만을 근거로 하여 흉선암 발생을 의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교도소의 인적·물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환자가 외부 진료를 요청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단순 흉통만을 이유로 의무관이 스스로 외부병원 후송을 결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감정의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흉통에 준하여 생각하면 감기로 기침을 많이 해서 늑골 부위에 발생한 염좌, 늑연골부위 염증이 발생한 경우가 흉통의 흔한 원인이며, 적절한 치료 시 통상 1개월 이내에 호전되는 경향이 있고,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신경병증 양상

으로 발생하는 흉통의 경우 환자에 따라서는 1개월 이상도 통증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교도소 의무과장은 (폰탈캡셀 등 진통제의) 처방을 통해 통상적인 진료를 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원고들은 망인에게 처방한 폰탈캡셀은 고혈압 환자에게는 처방해서는 안되는 약임에도 처방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망인에 대한 폰탈캡셀 처방과 망인의 흉선암 발병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정의에 따르면 폰탈캡셀과 같은 비스테로이드계열 진통소염제는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어 조절되지 않는 심한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나, 조절이 되는 고혈압 환자에게는 사용가능하고, 망인은 혈압이 높게 측정된 적이 있기는 하나 이후 하락하여 조절되었으므로 폰탈캡셀과 같은 비스테로이드계열 진통소염제를 처방할 수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III. 의료처우에 관한 국가배상소송의 요건

1. 국가배상소송의 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무원의 행위일 것, ②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행위일 것, ③ 담당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을 것, ④ 위법할 것, ⑤ 손해가 발생할 것, ⑥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공무원의 행위일 것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의료처우에 관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주로 의무관의 행위 및 의료담당 근무자에 대한 행위를 문제 삼는 바, 공무원의 행위일 것이라는 요건에는 해당할 것이다.

3.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행위일 것

판례는 광의설의 입장에서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4. 4. 9. 판결 2002다10691 판결).

대법원 2004. 4. 9. 판결 2002다10691 판결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등 참조).

4. 담당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을 것

가. 고의·과실의 의의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그에 반해 과실이란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행위로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과실은 다시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구체적 과실은 주의의무의 위반의 판단에 있어서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추상적 과실은 그 직



업에 종사하는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추상적 과실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가 구체적 과실보다 높으며, 판례는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을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추상적 과실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한편 시, 구, 읍, 면의 호적공무원의 호적신고에 대한 심사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법정의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절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만 심사하는 것이고(호적법 제76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62조 제1항) 그 신고사항의 실체적 진실과의 부합여부를 탐지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공무원도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등기원인의 실질적 요건을 심사함이 없이 다만 그 외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그것이 구비되어 있으면 가사실질적 등기원인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하여야 하는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41조, 제53조, 제55조).

나.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의사가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참조).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 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 319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75768 판결

교도소 등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피구금자는 스스로 의사에 의하여 시설로부터 나갈 수 없고 행동의 자유도 박탈되어 있으므로, 그 시설의 관리자는 피구금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바, 그 안전확보의무의 내용과 정도는 피구금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 시설의 물적·인적 상황, 시간적·장소적 상황 등에 따라 일의적이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5136 판결 등 참조).

다. 소결

의료처우에 관한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 등의 취지에 비추어 의무관 등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5. 위법할 것

의료처우에 관한 국가배상소송에 있어서 위 주의의무 위반 및 아래와 같은 위법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 판결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6. 손해가 발생할 것

손해는 법의침해로 인한 불이익을 말하며, 재산적 손해·비재산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를 가리킨다.

7.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런 인과관계의 판정은 관련법령, 가해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IV. 의료처우에 관한 비용 부담의 문제

1. 자비 부담 외부병원 진료에 대한 소장의 재량행위

교도소장의 직무수행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하고 이를 남용한 경우로서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관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수용자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의사를 표시한 수용자 모두가 원하는 시기에 곧바로 외부 진료를 받을 수는 없고, 소장으로서는 의무관의 소견과 함께 수용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의심할 수 있는 질환, 해당 증상 또는 질환의 긴급성과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허가 여부나 실행 시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가단5037740 판결

다. 판단

1)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과 수용자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자를 계호하며 교정시설 내 질서를 유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고 한다)의 역할과 책임, 교정행정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것인지는 소장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의료시설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즉시 시행하지 않은 소장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하고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무관이 제시한 의학적인 소견과 수용자의 구체적인 증상, 해당 증상 및 예상 질환의 긴급성과 중대성의 정도, 교정시설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의 상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 수용자에 대한 외부 의료시설의 진료는 소장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경우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하는 경우, 중환자 및 응급환자로서 신속히 외부 의료시설로 이송하여 진료하여야 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교정행정의 특수성과 외부 의료시설의 진료를 위해 요구되는 계호 인력 및 호소 차량 등 인적, 물적 시설의 제약 등을 고려하면, 자비로 외부 의료시설의 진료를 받기를 원한다는

2. 외부진료 등의 비용 부담에 관한 법령 등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수용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집행법 제30조). 또한,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형집행법 제36조제1항),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37조제1항).

외부진료 등의 비용 부담에 관하여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과 같은 법 제38조에서 수용자가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 일정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진료비 중 급여대상 항목은 본인 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용자가 아닌 국민들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가입자들로부터 납부된 보험료를 통하여 공단부담금인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수용자의 경우에는 수용된 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고 대신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데 위 요양급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60조, 제41조 등 참조). 즉 수용자는 보험료가 면제(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제1항 참조)되는 반면 국가가 그 해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3.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마31 결정

3. 판 단

가.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국가에 보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국가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수용자(수형자 및 미결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의료 보호의 필요성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정법 제26조는 교도소 등 구금시설의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 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치료의무 내지 의료보장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입법자는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에의 가입과 보험료 납입을 강제하는 의료보험제도를 마련하고 가입자의 보험료를 건강보험재정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8조).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가입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중복적으로 의료급여를 받게 된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무상의료급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수입원이 차단된 수용자에게 계속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수용자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받도록 한다면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의료부담을 건강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수용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 체계를 일원화하고 있는 것이다.

살피건대 수용자에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는 수형자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제재의 일환이거나 재소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금시설에 수용된 자에 대한 의료보장 체계를 일원화하고 수입원이 차단된 수용자의 건강보험료 납입부담을 없애 줌으로써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기본권 침해 여부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국가의 보호, 감독을 받는 수용자의 질병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의료보장 체계를 일원화하여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 제도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와 같은 공익은 입법자가 추구할 수 있는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2) 먼저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들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하 ‘건강권 등’으로 약칭한다)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규정은 수용자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것을 전제로 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자가 무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간접적으로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일 뿐, 수용자의 의료보장수급권을 직접 제약하는 규정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가사 국가의 예산상의 이유로 수용자들이 적절한 의료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보건의무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인지 이 사건 규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국비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체계로 할 것인지는 수형자에 대한 국가형별권의 적정한 행사 및 미결수용자에 대한 구금의 목적과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이 사건 규정은 수용자의 의료보장을 일차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건강보험급여를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그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입법 재량을 벗어나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거나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보건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규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보건대,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이란 유죄의 확정판결 전에 죄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는 불이익을 금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의 불이익이란 죄있는 자에 준하는 취급을 함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사회생활에 유형, 무형의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수용자의 의료보장체계를 일원화하고 수입원이 차단된 수용자의 건강보험료 납입부담을 면제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지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재소자라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또 이 사건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건강보험수급권과 같이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은 개인의 보험료와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이 사건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수용자에게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동시에 보험료 납부의무도 면제된다. 그렇다면 수급자의 자기기여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수급권이 정지되더라도 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으로 다룰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권 침해로 다룰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현재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948-949 참조).

(5) 끝으로 이 사건 규정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이용을 수용자라는 신분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수용자는 국가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점,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 점, 수용자에게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할 경우 보험료 부담능력의 유무에 따라 수용자간 의료급여에 형평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구금의 목적 실현에도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일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4. 의료처우에 관한 비용 부담에 관한 판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30조는 교정시설의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는 제1항 및 제5항에서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고,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집행법 제38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외부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는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교정시설의 자체적인 설비 또는 외부의료시설을 통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국가가 수용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용자에게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치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단 국가의 비용으로 외부진료를 받게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은 수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외부진료 시에는 수용자에게 진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지, 수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지 않은 외부진료의 경우에는 국가에게 그 진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적절한 치료’의 범위와 내용은 수용자의 질병상태와 그 치료비용, 수용기간, 국가의 예산규모,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나9335 판결).

따라서 수용자 간의 싸움과 같이 제3자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수용자가 스스로 자해하거나 난동을 부려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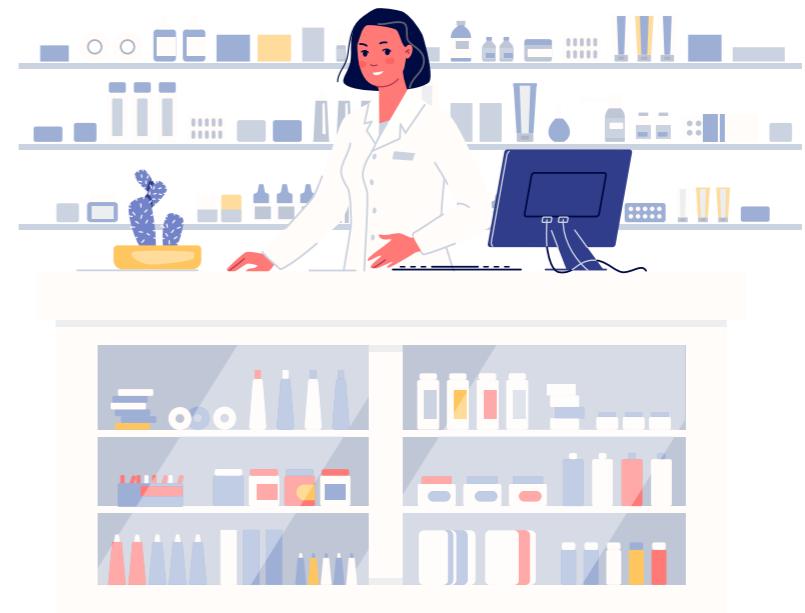
V. 맷음말

교정시설의 의료처우와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의료예산 부족 및 의료 인력 부족 등이 지적

되고 있다. 한편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용자 자신의 의학적 지식의 부족, 수용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과 정신적·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진료요청이 없더라도 교도소에 마련된 시설 등으로 수용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거나 외부 의사로 하여금 수용자를 진료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진료요청이 있을 때까지 소독이나 약 처방만 계속하여 이로써 수용자의 중대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하여 중대한 상해나 생명의 위협이 있는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경우 외부의료 시설 진료 우선 순위를 변경해서라도 적극 허가할 필요가 있겠다. 이로써 수용자 개인으로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고 국가로서도 막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를 피할 수 있을 것인바, 의료처우에 있어서도 더욱 세심한 검토·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법무부 교정시설 내 건축분야 직업훈련 교육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인

전주교도소 직업훈련과 직업훈련교사

목차

1. 서론
2. 직업훈련의 이론적 고찰
3. 해외사례
4. 교정시설 직업훈련교육의
개선방안
5. 결론

요약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범죄자 중 많은 수가 출소 후에도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느끼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재입소하곤 한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이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행 중인 교정교육 중 직업훈련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직업훈련이 수형자들의 출소 후 사회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과정이 편성되어 있는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법무부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수형자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훈련교육은 출소 후 취업이 가능한 직종 우선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미래의 노동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숙련 과정 등의 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둘째, 직종별로 직업훈련교사의 수를 확충하여 적정인원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외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다수의 초급수준의 직업훈련보다는 하나의 고급 기능에 집중하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직업훈련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에 비해 매우 부족한 1인당 직업훈련예산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섯째, 재입소율이나 취업률 등 직업훈련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법무부에서는 개발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핵심어 : 교정시설, 교도소, 수형자 직업훈련, 법무부 직업훈련교육

I.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2,020,731건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으며, 교정시설의 수형자는 54,667명에 이른다. 이를 수형자의 연령을 보면 20대가 14.4%, 30대가 21.8%, 40대가 29.5%, 50대가 24.5%, 60대이상이 9.7%로 50대 이상 고령자는 최근 10년 사이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수형자들의 형기를 보면 1년 미만은 전체의 16.2%, 1년 이상은 34.1%, 3년 이상은 19.6%, 5년 이상은 14.9%, 10년 이상은 9.3%로 나타났다.

현대사회의 범죄는 날로 지능화, 다양화, 흉악화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더 안 좋은 상황은 최근 각종 범죄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범죄자 중 상당수가 형벌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입



소하는 수용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재범자의 증가는 형사사법의 최종단계인 형집행 단계에서 교정당국이 시행 중인 수형자 교정·교화활동과 교정교육 전반에 대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나아가 법무부 교정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

교정교육에 있어 사회복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은 직업훈련교육이다. 사회복귀를 안정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경제적 여건은 직업훈련교육의 성과인 취업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교육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법무부 교정기관 내 직업훈련교육 중인 수형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2.1 연구의 내용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이념이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재범억제에 효과가 큰 법무부 교정기관 내 직업훈련교육의 운영현황과 해외 교정기관의 직업훈련교육 제도를 고찰하였다.

1.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훈련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공식 통계자료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직업훈련교육의 법적 근거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법령·규칙 등을 검토하고 통계자료를 통하여 수용자 직업훈련교육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 통계는 직업훈련기관 및 시설, 직업훈련 내용 등 수형자 직업훈련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무연감, 범죄백서 및 법무부의 각종 공식적인 발표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현재 직업훈련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수형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업훈련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직업훈련의 이론적 고찰

2.1 직업훈련의 의의

법무부 교정기관내 직업훈련이란 “교도소·구치소·지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형자들에게 석방 후 취업에 필요한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¹⁾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 「직업훈련법」이 공포되면서 1969년 전국 21개 교도소에서 공공직업훈련소를 만들어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19세기 말 이후 형별의 교육형주의 이념에 따라 행형에 있어서도 수형자의 교화개선과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행형법」제1조에는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형의 목적이 교육형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밝힘은 물론 기술교육, 즉 직업훈련교육이 수형자의 중요한 사회복귀수단의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2.2 직업훈련의 현황과 재범률

우리나라의 전체 교정기관의 직업훈련 교육과정 인원은 2017년 12월말 기준 6,502명이며, 이중 건축분야는 1,851명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의 관련보고서에 따르면 수형자들이 출소 후 갖고 있는 계획으로는 취업과 창업이 56.9%를 넘었고,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이 22.0%, 직업교육훈련이 14.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기술직·기능직 취업(37.8%)을 가장 희망하고, 생산직 취업(24.3%)인 것으로 나타났다.²⁾

1) 법무부,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2017

2) 법무부, 법무백서, 2017



〈표 1〉 출소 후 사회생활에 대한 계획비율

	빈도(명)	백분율(%)
취업 및 창업	145	56.9
직업훈련교육	36	14.1
자격면허취득	56	22.0
사회봉사	10	3.9
기타	8	3.1
합계	255	100

〈표 2〉 직종별 기술자격 취득현황(2015)

(단위: 명, %)

구분 종류	직업훈련 인원	비율	구분 종류	직업훈련 인원	비율
건축	1,279	39.2	의류	26	0.8
기계	226	6.9	전기	135	4.1
자동차	260	8.0	정보기술	234	7.2
미용	143	4.4	제과제빵	139	4.3
조리	210	6.4	공예	96	2.9
농림	140	4.3	안전관리	19	0.6
용접	112	3.4	서비스	245	7.5
총계		3,264	총계		100.0

기술직·기능직 취업에 대한 준비로 볼 수 있는 자격 및 면허취득 현황에서 2016년 12월 말 건축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을 보면 전체 취득률의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득 자격의 종류는 기능사자격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져, 현재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교육의 대부분이 짧은 기간의 단편적인 기능 위주의 직업훈련과정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법무부, 직업훈련교육과정 현황, 2010-2015

〈표 3〉 기술자격 취득실적(2008-2015)

연도 종류	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2010	2,856	-	-	4	277	2,575
2011	2,803	-	2	4	288	2,509
2012	2,813	-	4	-	252	2,557
2013	2,953	-	4	11	158	2,780
2014	3,278	-	1	-	79	3,198
2015	3,264	-	5	-	50	3,209

수형자의 직업훈련교육의 목적은 재범률을 낮춤으로써 재입소율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윤재홍의 2007년 기술자격취득자의 재입소률을 파악한 자료를 살펴보면 1975년부터 1998년까지 전체 출소자들의 재입소율은 52.7%인 반면, 기술자격취득자의 재입소률은 13.5%로 확연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적인 직업훈련교육은 기술자격취득을 통한 취업에 대한 준비라고 판단된다.³⁾

〈표 4〉 기술자격 출소자 및 전체출소자 재입소율 비교(윤재홍 2007)⁴⁾

구분	대상기간	전체 출소인원	재입소 인원	비율	기술자격취득출소자		
					전체출소인원	재입소인원	비율
계		1,309,641	685,235	52.7	52,699	7,157	13.5
1차 조사	1975-1979	252,528	123,737	49.0	9,156	1,481	16.2
2차 조사	1980-1984	242,242	126,923	52.4	12,239	1,572	12.8
3차 조사	1985-1989	237,829	146,154	61.5	9,898	904	9.1
4차 조사	1989-1993	267,821	149,863	56.0	9,662	1,215	12.6
5차 조사	1994-1998	309,221	138,558	44.8	11,692	1,985	17.0

아래의 표는 2017년 법무부 교정시설별 건축분야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국내 취업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직업훈련교육의 상당수는 출소 후 실용성 면에서도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과정을 기준에 운영해 왔던 관행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윤재홍, 수형자 직업능력개발체제의 사회적 지원과의 연계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표 5〉 건축분야 기관별 직업훈련 인원(2017)⁵⁾

지역/소별		과정				인원	
		단기실무 및 교도작업 적응훈련	양성훈련 (기능사과정)	향상훈련 (기사과정)	고급훈련 (기사이상과정)		
서 울	화성직업 훈련교도소		건축목공(30)		30	30	
			건축설비(60)		60	60	
			목공인테리어(30)		30	30	
		미장(80)	80		80		
		타일(100)	100		100		
	서울남부 교도소	건축도장(50)			50	50	
		타일(50)			50	50	
	원주교도소	플라스틱창호(25)			25	25	
		가구디자인(15)			15	15	
		목공인테리어(15)			15	15	
대 구	대구교도소		건축일반시공 (22)		22	22	
			건축일반시공 기능장(2)		2	2	
			건축목공(40)		40	40	
			조작(20)		20	20	
			목공인테리어(15)		15	15	
		타일(60)			60	60	
		건축목재기능장 (2)	2		2		
대 구	경북1교도소	조작(60)			60	60	
	미장(60)	60			60		
	창원교도소	건축시공(40)			40	40	

5) 법무부, 직업훈련교육과정 현황, 건축분야 정리, 2017

지역/소별	과정				인원		
	단기실무 및 교도작 업적응훈련	양성훈련 (기능사과정)	향상훈련 (기사과정)	고급훈련 (기사이상과정)			
대 구	청주교도소	타일(100)			100		
			건축도장(40)		40		
			전산응용건축제도 (22)		22		
			도배(40)		40		
대 전	홍성교도소		도배(20)		20		
	포항교도소		건축목공(25)		25		
	진주교도소		건축도장(50)		50		
			건축목공(30)		30		
광 주	경북직업 훈련교도소		타일(60)		60		
			방수(60)		60		
			건축도장(70)		70		
	안동교도소		도배(36)		36		
			건축목공(20)		20		
대 전	대전교도소			건축일반시공 (15)	15		
				타일(120)	120		
					건축일반시공 기능장(8)	8	
	청주교도소				보일러기능장(4)	4	
광 주	광주교도소		건축목공(20)		20		
	전주교도소		타일(30)		30		
			건축일반시공(5)		5		
			건축목공(20)		20		
전 라 부 남	순천교도소		건축도장(60)		60		
			도배(28)		28		
			건축목공(20)		20		
	목포교도소			건축일반시공(20)	20		
전 라 부 북	군산교도소			건축목공(15)	15		
	제주교도소		건축도장(10)		10		
	계		540	1,183	112	16	1,851



3. 해외사례

3.1 일본

일본의 수형자 대상 직업훈련교육은 1956년에 제정된 「수형자직업훈련규칙」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일본 내 노동수요의 변화를 예측하여 직업훈련교육에 적용하고 있다. 수형자 직업훈련교육은 사회에서의 노동수요, 고용 정세 등을 감안하여 훈련 종목의 통·폐합, 훈련 과정의 편성 및 연구를 종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993년 기준 일본 내 교도소에서 수형자 직업훈련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43개의 종목에 걸쳐 1,379명이다. 이를 종합하면 일본에서는 출소한 수형자의 약 4-5%의 인원이 직업훈련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직업훈련교육 수료자 중 종합직업훈련시설에서 연간 1,6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교육을 수료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 직업능력개발국장명의 이수증명서를 수여하고 있다. 수형자 직업훈련교육 종목 중 보일러운전·전기공사·자동차정비·이용·미용·세탁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자격 또는 면허의 취득자는 2,927명이 응시하여 2,339명이 합격하였으며, 전체 응시인원 대비 79.9%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직업훈련교육 수료자는 일반적으로 종전의 수용시설에 되돌아가 남은 형기를 보내는데 그 경우 거의 본인이 이수한 직업훈련종목과 관련된 교도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⁶⁾

3.2 싱가포르

싱가포르 직업훈련교육은 1975년 「갱생사업공사(SCORE)법」이 제정됨에 따라 갱생사업공사가 직업훈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직업훈련담당부서(VRU, Vocational Rehabilitation Unit)는 싱가포르 경제 변화에 따른 산업 변화에 보다 빨리 적응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2004년 주요 직업훈련교육 직종으로는 조리·세탁기술·전기배선·에어컨정비·PC정비·인터넷인증과정 등 총 22개의 직업훈련 교육과정에 1,024명, 취업능력향상과정에 2,367명이 교육을 받아 전체 수형자 총 3,391명이 직업훈련교육을 받았다.

또한, 수형자 직업훈련의 목적을 ‘직업훈련(Job Training)은 공인된 직업훈련 수요평가도구(Enhanced Personal Route Map, EPRM)를 활용하여, 훈련자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해, 출소 후 취업에 필요한 능력과 적성을 평가하여 현실적인 직업훈련방법을 모색하고, 직업훈련을 받으면 반드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도 병행하고 있다’⁷⁾

3.3 미국

미국은 1930년대 교정교육협회가 설치되면서 체계화되기 시작하여 1991년 미국 교육부는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교육에 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하여 OCE(Office of Correctional Education)를 설립하여 주정부, 학교, 교정시설에 직업훈련 교육훈련에 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고 교정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에는 법무부와 교육부의 공동예산 출연으로 NICE(The National Institute for Correctional Education)를 설립하여 직업훈련과정 개발, 직업훈련효과 측정, 연구계획 및 직업훈련 전문가들의 개발 등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로 교정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및 행정요원들을 지원하여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미국의 수형자 직업훈련교육의 직종은 각각의 수형시설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선정되며, 훈련기간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오하이오주에서는 회계·자동차수리·이발·목공·미용·음식 등 27개 분야의 과정이 개설되어 26개 수형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플로리다주에서는 목공·호텔관광분야 훈련·식품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요리사를 양성하기 위한 식품조리와 과일·채소재배법을 가르치는 원예교육·컴퓨터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과정수료 후 수형자들은 지역의 호텔 등 관련분야에서 현장교육을 받게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수형자들에게 지역사회의 직업훈련학교에서 실시되는 음식조

6) 백일훈, 수형자 사회정책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17

7) 백일훈, 수형자 사회정책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17

리·인쇄가공·원예과정 등을 지역 학교들과 연계하여 단기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형시설 내에서 직업훈련교육을 수료한 수형자들에게 사회복귀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Inmate Placement Program)을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다.⁸⁾

3.4 독일

독일의 「행형법」 제2조는 '자유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수형자가 장래 사회적 책임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통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수용생활은 가능한 사회의 일반인들의 생활조건과 유사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교정시설은 각 주에서 운영하고 있고 연방에서 비용을 부담하지만 운영은 각주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정시설마다 특색있는 직업훈련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직업훈련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최대한 일반사회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업훈련교육의 종목으로는 기초교육으로 철공·자동차정비·전기·건축·목공·도장·실내장식·회계업무 등 16개의 종목이 있고, 재교육과정으로는 36개의 종목이 개설되어 있다. 독일의 수형자 직업훈련교육은 원칙적으로 수형자의 생활근거지 또는 그 근거지가 될 지역의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직업훈련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그 수형자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종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 개설된 교정시설로 이송하여 직업훈련교육을 받도록 배려하고 있다.⁹⁾

4. 교정시설 직업훈련교육의 개선방안

4.1 훈련 목표에 대한 인식의 전환

교정기관의 출소자의 재범 원인은 단순히 경제적 빈곤뿐만이 아니라 직업의식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치관의 결여 등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사회생활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실패함으로써 재범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는 출소 후 생계유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형자 직업훈련 교육의 목표를 재범방지를 위한 구직 수단으로서 단순하고 단편적인 기능자격취득에 중점을 둔다면 국가기술자격에 합격률을 높여 통계와 수치상 가시적인 성과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8) 백일훈, 수형자 사회정책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17

9) 백일훈, 수형자 사회정책 책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17

그러나 이외에 건전한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이나 직업윤리, 생활지도 등 직업인으로써 갖추어야 할 중요한 인성교육도 소홀해지면 안 될 부분 중 하나이다. 현재까지의 교정행정의 문제점을 보면, 이들이 출소 후 그 기술이나 기능으로 취업에 성공하고, 취업이 된 이후 직장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사후관리프로그램에는 관심이 없어 사회복귀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직업훈련교육의 내용을 단편적이고 단순하며, 사회의 변화로 효용가치가 없는 6개월 이하 단기과정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에 대비한 교육과정을 지양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써 소양을 갖추고 한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와 기능공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 더불어 수형자들이 출소 후 안정된 직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능은 물론 사회 적응을 위한 인성교육 및 직업윤리교육 등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2 직업훈련교사의 확충과 자질 향상

법무부의 직업훈련법 규정에 따르면 직업훈련교사 1인당 교육인원은 학과별 30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형자 직업훈련교사의 정원은 2005년 12월 말 평균 91명으로 기준과는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조사결과 실제로 직업훈련교사 1인당 3~4개 직종과 교육생 100여 명을 담당하는 곳도 있었다. 이와 같이 직업훈련교사의 인원이 학과와 교육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말처럼 직업훈련교육의 전문화를 도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법무부 내 전체 교정직 공무원 중 0.9% 뿐인 직업훈련교사 직렬의 인원 충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사회의 직업교육훈련체계는 기능 중심의 교육훈련을 강조하는 단순 기능인력 양성체계에서 필요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훈련교사의 역할과 자질에도 시대에 맞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법무연수원교육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2년제 대학이나 한국폴리텍대학, 직업전문학교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공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습득과 학문적 이론에 바탕을 둔 직업훈련교육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3 직업훈련 직종의 다양화와 전문성 고려

직업훈련교육 직종의 선정은 수형자들의 기능을 양성하여 출소 후 그 직종으로 취업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교육의 직종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 직종으로 선정하여 취업유망직종과 시대적인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한 사양산업직종, 노동시장 인력수급 현황 및 고용정책 동향 등을 잘 살펴서 신설 및 폐지하는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가 있다. 첫째는 사회에서 인기 있는 정보화와 관련한 첨단유망직종이고 둘째는 일자리는 많으나 선호도가 낮아 구인이 어려운 3D 관련 직종이다. 사실 국내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전과자의 신분으로 최첨단기술을 습득하여 일반인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는 극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자본의 창업과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건축·자동차·기계산업·전기공사 분야 등을 직업훈련교육 직종으로 선정해 좀 더 체계적인 기술습득과 실무적으로 숙련된 기능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다고 본다. 또한 민간기업과 기업맞춤형 직업훈련교육 직종을 선정하여 해당 기술자를 양성한 뒤 출소 시 취업과 연계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다.

2015년 법무부의 내부자료를 보면 교과목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잘 나와 있다. 첫째, 직업훈련 교육과정 중 개편해야 할 종목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점역교정 종목을 선택했는데, 그중 직업훈련교사는 자격증 취득 및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광고도장을, 수형자는 금형 등의 종목이 개편되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교정시설 기관장 및 부서장은 직업훈련교육 기간 등의 문제점으로 단기실무과정이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표 6〉 건축분야 개편 요구종목에 대한 인식조사¹⁰⁾

개편요구종목			
구분	교정시설 기관장 및 부서장	직업훈련교사	수형자
내용	건축도장	건축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배 · 타일 · 미장 · 건축시공

둘째, 직업훈련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개설되었으면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직업훈련교사는 3D업종의 개설을 꼽았으며, 그 이유로는 근무환경은 열악하지만 상대적으로 수형자들에게 취업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표 7〉 건축분야 신설 희망종목에 대한 인식조사¹¹⁾

개편요구종목			
구분	교정시설 기관장 및 부서장	직업훈련교사	수형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분야 · 3D업종 · 보일러(온수온돌, 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업종 · 건축도장 · 도배 · 실내건축 	건설안전관리사



또한, 2011년 최규철의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수형자 직업교육의 개선방안”에서 수형자들의 91%가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76%는 교정시설에서 시행하는 교화활동 중 출소 후 직업훈련교육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교사가 중점을 두는 지도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숙련된 기능습득은 14%에 불과하고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한 직업교육이라는 응답이 43%에 이르고 있다. 취득한 기능으로 취업이 어렵다면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37%의 직업훈련생이 기능의 숙련도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직업훈련생의 74%가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직업훈련교육이 취업에 유망한 직종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취득한 기능으로 취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62%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장래 배우고 싶은 기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의 직업훈련 직종이라는 응답은 27%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해 직업훈련생이 현재 받고 있는 직업훈련교육은 자신이 희망하지는 않지만 취업이 유망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형자의 인식과 현재의 직업훈련 직종은 국내 노동시장과 괴리가 많다.

법무부 설문조사에 응답한 수형자의 23%가 직업훈련교육 직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수형자의 직업훈련직종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에서 어떤 직종과 어떤 자격증이 유망한가?’이다. 수형자 직업훈련교육의 경우, 수용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될 뿐만 아니라, 직업 세계와도 격리되어 직업훈련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와 경제 상황,

10) 이상봉,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종목개발 재정리, 한국교원대학교, 2015

11) 이상봉, 수형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종목개발 재정리, 한국교원대학교, 2015

인력수급 문제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직업훈련교육의 실효성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수형자 직업훈련 교육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노동시장에서 기술·기능인력의 수요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직업훈련교육 직종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른 국내·외 건설분야 직종전망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다음 표는 향후 한국·미국·호주 건설분야 유망 직종을 분석한 자료이다.

〈표 8〉 향후 한국·미국·호주 건설분야 유망 직종 분석(2007)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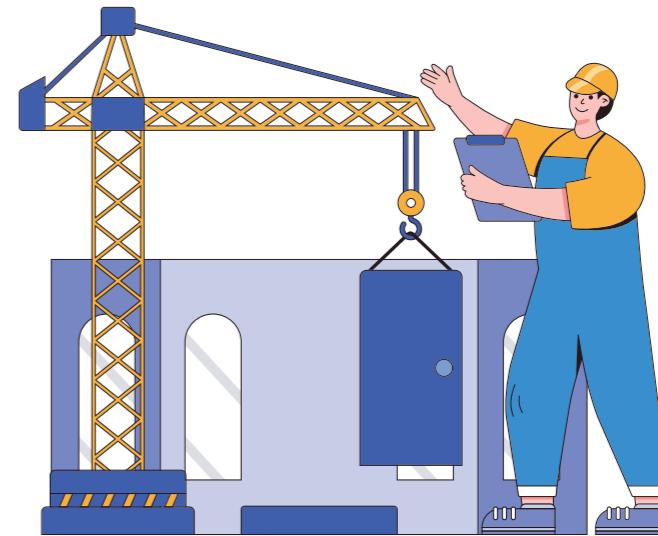
분야	직업명	직업전망			임금(연봉, US\$)			고용규모(명)		
		한국	미국	호주	한국	미국	호주	한국	미국	호주
건축관련직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한) 건축가(조경 및 선박 제외)(미) 건축 및 조경건축가(호)	유지 / 다소감소	빠른성장	Good	28,040	70,320	66,084	139,113	141,200	21,600
	조경기술자(한) 조경건축가(미) 건축 및 조경건축가(호)	다소증가	매우 빠른성장	Good	26,982	58,960	66,084	10,098	26,700	21,600
	건설감리사(호)	-	-	Good	-	-	61,295	-	-	71,800
	측량사, 지도제작전문가, 사진측량사 및 측량기술공(미), 건축기사(호)		빠른성장	Good	51,180	59,394		147,000	51,500	

주: 1) 호주의 건축 및 조경건축가의 경우 일반 건축 및 조경건축을 포함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중복 제시하였다.

건축관련직에서는 보다 아름답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경 관련 기술자, 새로운 건축물을 설계 및 감리하는 건축가, 건축 및 조경건축가, 실제로 건물을 짓고 만드는 건축기술자 등 건설 관련 직업들이 미래에도 유망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미래사회의 발전과 인공지능(AI)이 발전한다 해도 건설 분야에서 사람의 손이 필요한 공정은 여전히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4 체계적인 직업교육 시스템 정비

현재 교정기관에서 실시되는 직업훈련교육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출소자들의 취업·창업알선·사회복귀 지원 등 사후관리와 연계성이 부족하다. 단적인 예로 입소 시에 일반적인 분류심사만 하고 직업훈련교육을 위한 수형자별 직업심리검사나 적성검사, 직업상담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출소 전 수형자에 대한 취업·창업교육도 이미 취득한 기능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선발하여 일률적인 교육을 실시하



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업·창업 알선제도도 홍보가 부족하여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응답한 직업훈련생이 전체의 6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앞으로 법무부의 직업훈련교육과 관련된 행정서비스의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에 입소 시 분류심사를 통해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과 처우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소자를 위한 취업·창업지원업무도 법무부 내 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실정이어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

4.5 예산과 시설투자의 미흡성

수형자 직업훈련교육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교도작업특별회계상의 이익금 범위 내에서 편성·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 교육예산이 독립되지 않아 교육시설 개선 등, 투자확대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실시 중인 직업훈련교육 중 공공직업훈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훈련과정의 91%, 훈련인원의 81%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시행 중인 한국폴리텍대학의 학생들과 비교해 보면 1인당 약 4배가량 적은 교육비로 직업훈련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텐마크의 경우 수형자 직업훈련생들과 사회 직업훈련생들에게 거의 동일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수형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교육비가 턱없이 적다고 볼 수 있다.

12) 한지영, 이공계 인력의 미래 유망직업 연구동향: 한국, 미국, 호주의 직업전망을 중심으로, 한국공학교육학회, 2012



4.6 기술 숙련도의 부족

30~40년 동안 교정시설의 직업훈련교육은 대부분 6개월 단기과정의 기능사자격증 취득에만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라 수용처우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며,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업훈련교사가 중점을 두는 지도방향에 대한 질문에 숙련된 기능연마는 불과 14%에 불과하고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한 직업교육이라는 응답이 43%에 이른다.

또한, 취득한 기능이 취업이 어렵다면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37%의 훈련생이 기능의 숙련도 부족이라고 응답을 하였다. 취업을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유용한 수단이 될수는 있으나, 기업체에서는 자격증만을 취득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자격증에 걸맞은 양질의 기술력을 갖춘 직업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격증에 걸맞은 기술·기능 능력의 습득이 없다면 취업이 되더라도 직장에서 적응하기 어렵고 창업을 하더라도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아 경제적인 자립에 실패할 것이다. 따라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취득한 자격증이나 기술을 사회의 수요에 맞도록 숙련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4.7 훈련 성과의 관리와 측정기법의 개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난 뒤에 이에 대한 성과를 개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다음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변화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이 가능해질

것이다. 수형자들의 직업훈련교육에 투입되는 예산과 직업훈련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서 재입소율과 성공적인 취업률 등을 들 수 있다.

직업훈련교육을 수료한 출소자들의 재입소율이 직업훈련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출소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또한 직업훈련교육을 이수한 수형자들이 이수하지 않은 수형자들에 비해 취업률이 높고, 임금수준에 있어서도 직업훈련교육을 이수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수형자들이 이를 취득하지 못한 수형자보다 높게 나타난다면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투자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재입소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여 타 범죄예방에 투입되는 재원을 직업훈련 교육분야에 전환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교육을 이수하고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직업훈련생에 대해서 기술 및 기능인력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atabase)하여 직업훈련교육의 성과에 대한 측정은 물론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사회의 정착과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이에 통해 재범률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여야 한다.

4.8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 강화

교정시설 및 출소 후 유관기관에서의 직업훈련교육을 내실화하고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의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정기관 내 직업훈련은 기능사자격증 취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라 수용처우와 가석방 등의 처우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교육이 기능사자격증 취득에만 집중하고 이에 걸맞은 실무기능과 그 기술에 따른 숙련교육은 소홀히 하여, 출소 후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습득이 되지 못한다면 취득한 자격증은 의미가 없어진다. 아울러 교도소 내에서의 출소 전 교육과 출소 후 유관기관을 통한 교육의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많은 수의 출소자들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교정기관 내에서는 주기적으로 출소가 임박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취·창업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기술수준이 낮거나 취업하고자하는 직업에 대한 실무경험이 부족으로 행사에 참여한 기업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또한, 출소자의 취업에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전과자라는 사회적 편견과 함께 교도소에서 취득한 자격증은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이 크게 작용한다. 이러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형자 직업훈련교육시 국가기술자격증 수준에 맞는 기술과 기능을 충분히 연마시켜야만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입소 후 개인생활 대부분을 박탈당하고 상당기간 사회구성원으로 배제된 상태에서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 이 때문에 출소하기 전에 재사회화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재범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이 출소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취업능력이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직업훈련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소 후 사회에 취업이 가능한 우선직종을 파악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실습교육을 강화하여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에 맞는 기술 및 기능을 숙련시키고 다양한 직업훈련직종을 개발하여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수료 후 기능숙련과정이나 고급과정을 개설하여 습득한 기술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효과적인 기술 및 기능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교정공무원 중 직업훈련교사를 확충하여 각 직종별 적정인원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외부 대학과 연계하여 새로운 지식·기술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훈련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교정시설별 특정전문분야를

달리하여 차별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초급과정의 다수의 기능자격보다는 한 개의 고급자격과 실무능력 습득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교정시설과 기업체, 대학교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직업훈련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넷째,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연수제도와 교과과정 중 학기 방학을 통한 교사들의 재충전시간도 필요하다.

다섯째, 부족한 수형자의 직업훈련 교육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여섯째, 직업훈련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개발되어져야 한다. 수형자들의 직업훈련교육에 투입되는 예산과 직업훈련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서 재입소율과 취업 가능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직업훈련교육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Oh Won-sun, A Comparative Study on the Vocational Training of Korean and American Prisoners. (2001)
- [2] Jang Kyu-won,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Prison Work. (2007)
- [3] Kim Young-sik, Seo Ho-you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orrections Service. (2009), Vol.42, pp. 163-192.
- [4] Korea Ministry of Justice, Crime White book. (2016)
- [5] Choi Gyu-cheol, A study on the improving way of vocational education for the protection of recidivism of released offenders. (2011)
- [6] Lee Sang-bong,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items to strengthen the employment capacity of prisoners. (2015)
- [7] Han Ji-young, Future Prospect of Occup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Trends: Focusing on Occupational Prospects in Korea, USA and Australia. (2012)
- [8] Han Ji-young,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rch. (2012), Vol.15, No.5, pp.140-150
- [9] Cho Hee-won, A Study on Employment Experience of Emigrant. (2012)
- [10] Hahn Sang-ho, A study on the Reality of the Prison Labor and Improvement Scheme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2010)
- [11] Baek il-hoon, The Research of Improvement of Vocation Training Program the Prisoner's Social Resettlement. (2017)
- [12] Hong Seong-in, Convergence Research Letter. (2018), Vol.4, No.1, January, pp.55-58

교정본부 N / E / W / S

교정본부 N / E / W / S



2024년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주요 내용

- 외부전문가를 통한 정신건강 특강, 피지컬 상담, 심리검사
- 커피트럭 지원 등 직원 정신건강관리 지원 이벤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제41회 이사회·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2024. 2. 23.(금) 12:00

동보성(연회장)

일시·장소

방문자

주요 내용

2. 23.(금) 12:00, 서울 강남구

교정동우회장, 교정본부장, 교정동우회 회원 등 50여 명

정기총회, 회장 이·취임식(인사말씀, 감사패 전달 등)

기획재정부(지방시대 아젠다TF) 교정기관 현장방문



방문 목적

교정기관 등을 방문하여 인구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의 활력 모색

일시·장소

2. 7.(수) 15:30, 경북북부제1(교)

방문자

-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 복지과장 등 5명
-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법사예산과장, 지역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 사무관

우수 수사관 및 우수 정보관 증서 수여식



일시·장소

2. 26.(월) 10:30, 교정본부장실

주요 내용

- (우수 수사관) 서울동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 교위 김진섭

- (우수 정보관) 서울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 교위 김현성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전광호

간담회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2월 15일 대회의실에서 소속기관 송무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제영 청장은 “소속기관의 송무 업무 외에도 법률 자문 역할에 협조하여, 일선 기관 담당자들이 법에 근거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구치소 / 교위 임완섭

이웃사랑 실천

서울구치소는 2월 6일 관내 장애인, 노인 등을 보살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각 5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김문태 소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지역사회에 전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전했다.

안양교도소 / 교사 이승연

인권국장 기관 방문

안양교도소는 2월 19일 법무부 인권국장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번 참관은 UN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하여 수용환경 및 처우 등을 파악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수원구치소 / 교사 안태진

설명회 개최

수원구치소는 2월 5일 ‘테라원’과 함께 세계 최초로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전자 보호장비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현우 소장은 “스마트 보호장비가 상용화된다면 인권과 기술이 융합된 K-교정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교정시설 참관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2월 20일 신안산대학교 경호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설참관을 실시했다. 박종관 교수는 “최신 교정시설과 교정행정 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기회를 주신 동부구치소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사랑의 헌혈’ 실시

인천구치소는 2월 15일 구치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의 감소 등으로 혈액 부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실시됐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이준구

후원금 전달 및 수용자 합동차례 실시

서울남부구치소는 2월 6일 구로구 내에 위치한 여성장애인전문 복지관과 보육원 두 곳을 방문하여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설 명절에는 각 작업장 대표와 취업 수험자 등 30명과 합동차례를 지내면서 조상의 음덕을 기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사 심우현

‘사랑의 손잡기’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2월 6일부터 8일까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직원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했다. 이 성금은 교도소 인근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학생들에게 전달됐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김조영

사랑나눔 행사 실시

의정부교도소는 2월 5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등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돋기 위한 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특히, 수용자 가족 등 민원인들이 사랑의 동전 모으기 함에 기부한 성금까지 포함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



여주교도소 / 교사 신재훈

체육대회 개최

여주교도소는 2월 22일 직원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박진홍 소장은 “업무에 전념하는 모든 직원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정월대보름을 맞아 함께 민속놀이를 하며, 교정위원 및 대체복무요원들까지 모든 구성원이 화합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김재현

설맞이 지원

서울남부교도소는 2월 10일 구로구 소재 에델마을의 어린이 및 장애시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어르신들이 명절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간식 등을 지원하였다.



춘천교도소 / 교도 박상혁

‘사랑의 헌혈’ 실시

춘천교도소는 2월 20일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에서 춘천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생명나눔 - 사랑의 단체헌혈 캠페인」으로, 춘천교도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실시됐다.

원주교도소 / 교위 천병훈

사회복지시설 방문

원주교도소는 2월 8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

을 위해 천사노인요양원에 위문금품을 전달하였다. 위문금품은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원주교도소 전 직원의 모금으로 마련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채동용

업무협약 체결

강릉교도소는 2월 13일 가톨릭관동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컨버전스룸에서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은 관학 협동사업 공동 연구,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의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영월교도소 / 교사 김준일

대면 교육 실시

영월교도소는 2월 15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교정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기관장 직접·집합교육으로 일근, 사무직 야근자 등 66명이 참석했다. 주된 교육 내용으로는 등이 공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 근절,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등이 있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성명제

정기 총회 개최

강원북부교도소는 2월 16일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김계남 교정협의회장을 포함한 교정위원 및 준교

정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 및 감사장 수여, 총회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박세영

기부 행사 개최

평택지소는 2월 7일 평택·안성 교정위원 7명과 떡·음료수 기부 행사를 실시했다. 김성렬 소장은 "수용자들을 위해 떡·음료수를 기부해 준 평택·안성 교정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수용자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소망교도소 / 8직급 황재민

교정시설 참관

소망교도소는 2월 19일 수용자 교정·교화 교류를 위해 방문한 COSA코리아 전남동부지부를 맞이했다. COSA코리아 김웅지 대표와 회원들은 "대한민국 교정행정 및 민영교도소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태도

설 명절 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은 2월 6일 사회복지시설인 '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위문금을 대구지방보훈청에 위탁했다. 김동현 청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소외이웃에 보탬이 되는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소외된 이웃 방문

대구교도소는 2월 6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복

지시설 8곳에 위문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태환 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수용자 특식 기부

부산구치소는 2월 7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설을 앞두고 수용자 특식용 빵 4,000개를 기증받았다. 박수연 소장은 "명절에 가족과 떨어져 수용 생활을 해야 하는 수용자들에게 위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신 교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문현배

수용자 특식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2월 5일 설을 맞이하여 교정협의회로부터 떡 1,400인분을 기증받아 전 수용자에게 지급했다. 교정협의회 정문교 회장은 "수용자들과 조금이나마 사회의 온정을 나누고자 마련한 것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창원교도소 / 교위 김난희

'온정 나눔' 행사 개최

창원교도소는 2월 7일 '설맞이 수용자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하여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떡과 바나나, 주스(250만원 상당)를

후원받았다. 윤순풍 소장은 "교정협의회의 지원에 감사하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교도소 / 교위 이재윤

이웃사랑 나눔행사 실시

부산교도소는 2월 7일 김유미 차장 등 식약처 5명, 이현훈 국장 등 보건복지부 3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실시했다. 참관을 통하여 교정 행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고, 미약류사범 재활프로그램(회복이음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교도소 / 교사 박승현

예방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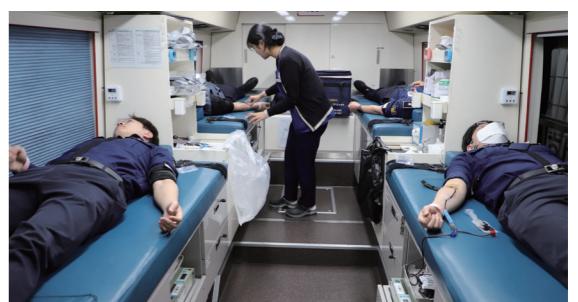
포항교도소는 2월 1일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정원석 강사가 공직사회 갑질 예방 및 대응 방법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연근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진주교도소는 2월 21일 2024년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조형근 소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직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주기적으로 헌혈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곽재원**특별교육 실시**

대구구치소는 2월 14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김영광 소장은 “공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상 과도한 비방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한준호****특별교육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2월 1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으로는 공무상 알게 된 정보 누설 행위 근절, SNS 사용 시 주의할 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복무, 징계 등과 관련된 것으로 공직기강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됐다.

안동교도소 / 교도 이성규**‘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

안동교도소는 2월 19일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직원 11명이 헌혈에 동참하는 모습을 통하여 교정행정의 따뜻한 마음과 봉사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도 박승수****특별교육 실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2월 15일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을 실

시하였다. 이영성 소장은 직접 강의를 진행하며 “공무상 정보 누출 및 SNS 사용 주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통해 국민께 신뢰를 줄 수 있는 교정직 공무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직원들에게 강조의 말을 전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사 진용혁**이웃사랑 실천**

김천소년교도소는 2월 1일 지역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요롭게 살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인 베다니성화원, 김천행복한요양원, 한마음지역아동센터 등 3개 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였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채원기****위문금 전달**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하였다. 진보면 소재 결손가정 등 지역주민 5가구를 선정하여 1가구당 30만원의 위문금 전달 및 주변 환경 정리 등을 실시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사랑나눔 성금 전달**

울산구치소는 2월 7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내 이웃 주민

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안경수 소장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사회에 이웃과 상생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교도소 / 교위 김성우**기증품 접수**

경주교도소는 2월 7일 불국사 자원봉사단에서 고급빵 1,200개를 기증받아 수용자에게 전달하였다. 김철민 소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수용자에게 기증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교정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영구치소 / 교위 이성민****기증품 접수**

통영구치소는 2월 8일 교정협의회(회장 김형길)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백설기 550개 및 두유 1,100개를 기증받았다. 김형길 회장은 “설 명절을 기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밀양구치소 / 교위 김영근****이웃사랑 봉사활동 실시**

밀양구치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인 소망원, 신망원, 나눔과 기쁨재단에 소정의 성금을 전달하고, 기관



내 마을회관 3곳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 및 공존을 도모하는 이웃사랑 봉사를 실천했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청렴·반부패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상주교도소는 2월 1일 청렴·반부패 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직원 대표로 총무과장이 결의문을 선서하였고 직원 모두 청렴서약서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며 경각심을 고취했다.

**거창구치소 / 교도 전종일****이웃사랑 나눔행사 실시**

거창구치소는 2월 7일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전 직원이 조성한 기금 90만 원으로 아동복지시설인 경천공간과 지역 내 독거노인들을 지원했다.

[대전지방교정청]**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현도****이웃사랑 나눔 실천**



대전지방교정청은 2월 6일 지역 내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과 공동생활가정에 성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직원 모임인 '한우 물봉사단'은 무의탁 노인 양로시설을 찾아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시설 청소봉사를 실시했다.

대전교도소 / 교위 이호현

참관 행사 실시

대전교도소는 2월 14일 경찰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내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교정 홍보영상 시청 및 교정장비 체험, 가족접견실, 수용동 등 구내시설을 참관하며 교정정책과 교정 현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청주교도소 / 교위 오요한

이웃사랑 나눔 실천

청주교도소는 2월 8일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돋기 위해 분평동·산남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박원규 소장은 "전 직원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돋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안교도소 / 교도 이철희

위문활동 실시

천안교도소는 2월 7일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 위문활동을 실시했다. 서민 소장은 "이웃 돋기를 솔선함으로써 기부·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지원 및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구현할 것이다"고 전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이지은

특별교육 실시

청주여자교도소는 2월 1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

한 지시사항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방호 지원 협의 방문

공주교도소에 2월 15일 유관기관인 제3585부대에서 방호 지원 협의를 위해 방문했다. 이날 제3585부대 여단장 등 3명은 공주교도소를 방문하여 소장실에서 환담 시간을 갖고 중앙통제실로 이동하여 현황 설명을 듣는 등 방호 지원에 관하여 협의를 했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이웃사랑 나눔 실천

충주구치소는 2월 1일 설을 맞아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했다.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다은 봉사단'은 충주시 산척면에 위치한 '오은샛별원'과 2014년부터 인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및 성금을 지원하고 있다.

홍성교도소 / 교도 이병훈

교화행사 실시

홍성교도소는 2월 1일 '설맞이 교정위원 멘토링데이 행사'를 실시했다. 교정위원 멘토링데이는 수형자와 교정위원이 함께 음식을 먹으며 자유롭게 대화하고 고충 상담 등 마음을 나누는 행사로 이날 행사에는 외부인사 15명이 참석하여 각 작업장 봉사원 및 수용동 도우미 수형자 18명을 격려했다.



한 지시사항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기증품 접수

천안개방교도소는 2월 7일 교정협의회(회장 임건태)에서 설 명절을 맞아 수형자를 위해 과일(배 250개)을 기증받았다. 임건태 회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교정위원들의 따뜻한 관심이 수형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위 박효진

기증품 접수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 2월 7일 교정위원들이 방문하여 기부금품을 전달했다. 교정위원들은 "수용자들의 마음에도 봄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교도관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전웅배

위문활동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2월 7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위문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논산지소 직원들은 중증장애인복지시설 다애원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의 자택에도 방문하여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장우영

전자장치 사용 교육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광주교도소와 업무 협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6세대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기존 장비의 문제점이 개선된 장비를 직접 다뤄보며, 자체 통신 기능을 통한 GPS 위치추적 시스템이 적용된 이장치가 교정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교도소 / 교위 김거현

장학금 기탁

광주교도소는 2월 1일 광주 북구 삼각동 일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장학금으로 총 120만원을 기탁했다. 김도형 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 직원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열린 교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이웃 사랑 실천

전주교도소는 2월 6일 장애인 복지시설인 '사회진달네집'과 '전주영아원'을 방문하여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직원들은 각각 교도작업 제품인 화장지(300개), 위문금(50만원)을 전달하며 작은 도움을 주었다.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사회복지시설 위문

순천교도소는 2월 7일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6곳에 각 총 300만원을 전달했다. 조병주 소장은 "직원들의 성금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교도소 / 교위 윤창열

음주운전 균절·청렴 결의대회 개최

장흥교도소는 2월 1일 월례회에서 음주운전 균절 및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국진 소장은 “음주운전은 항상 경계하여야 할 중요한 사안이며, 청렴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할 숙명이니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합시다”라고 당부했다.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환

사랑나눔 기부금 전달

목포교도소는 2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무안군 일로읍 소재의 아동양육시설인 ‘소전원’에 방문하여 설맞이 사랑나눔 기부금을 전달했다. 목포교도소는 앞으로도 소외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산교도소 / 교사 윤나리

사랑나눔 기부

군산교도소는 2월 7일 교정협의회로부터 돈육 200kg을 기부받았다. 오우정 소장은 “교정협의회 위원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정성 가득한 지원을 받은 만큼 수용자들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교도소 / 교사 고동성

위문금 전달

제주교도소는 2월 7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관내 사회복지·아동 시설 3곳을 방문해 위문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배경석 소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 교정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교도소 / 교도 김수민

기증품 기부

해남교도소는 2월 7일 해남군청으로부터 사과 32상자를 기증 받았다. 지경선 소장은 “수용자들이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풍요로운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기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 나은 교정, 교화 프로그램으로 수용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교도소 / 교도 윤홍익

이웃사랑 실천

정읍교도소는 2월 5일 민족 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정읍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정읍애육원에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읍교도소가 되는데 이바지했다.

모범 공무원



의정부교도소 교위 김영철

김영철 교위는 2007년 임용되어 현재까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수용질서 및 교정·교화와 교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였다. 특히, 2020년 신설된 대체복무제도의 정착을 위해 업무 매뉴얼 등을 정립하고, 대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 등을 하며 대원들 한명 한명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챙겼다.



부산구치소 교위 김민수

김민수 교위는 2023년 12월, 수용자 이OO이 평소와 다르게 건성으로 대답하는 등의 특이 모습을 보여 CCTV로 주의깊게 영상계호를 실시하였고, 자살 시도하는 것을 발견하여 즉시 제지함으로써 교정사고 방지에 기여했다.



청주교도소 교위 홍창표

홍창표 교위는 수용 생활이 낯선 미결수용자들의 잦은 규율 위반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공동생활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들을 자세히 설명하여 평온하고 안정적인 수용생활이 되도록 기여하였다. 또한, 수용자의 부정 서신연락, 부정물품 반·출입을 차단하여 교정사고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범 관계가 있는 수용자들의 명단을 숙지하여 운동, 접견 등 이동 시 부정한 연락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절하는 등 수용질서를 확립하였다.



광주교도소 교감 한성배

한성배 교감은 다수의 미지정 수용자와 조사·징벌 수용자를 관리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용자를 처우하고 또한 고충사항이 발생하면 면밀히 관찰 및 검토하여 심적불안자들의 심적안정 및 교정심리 특이자, 소장면담 신청자, 장애인 등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여 교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건전한 수용생활을 유도하여 교정교화에 크게 기여했다.



숨은 그림 찾기

최대한 집중해야 찾을 수 있는 숨은 그림 찾기!

익숙한 시선으로 그림을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물건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두뇌 발달과 함께 창의력을 키우기에 좋은 숨은 그림 찾기에 도전해 보세요.



아래 그림을 찾아보세요!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correct2023@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퀴즈 당첨자 선물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 원권 발송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일시: 4월 5일(금)~6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관내·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안내

선거일 투표

일시: 4월 10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장소: 지정된 투표소

각 세대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유효표·무효표 예시

· 공직선거법 제 179조 (무효투표)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100조의2 (무효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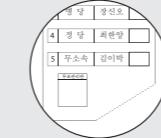
유효표



① 표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 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된 것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무효표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구·사·군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것

준비물 및 주의사항

준비물: 신분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청소년증,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위의 신분증 중에 모바일 신분증이 있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단, 화면 캡처 등 저장한 이미지 사용불가)

* 그 밖의 신분증은 구·시·군위원회로 문의

1인 2표: 선거마다 하나의 정당, 한 명의 후보자에게 각각 기표

*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지역의 선거인은 해당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